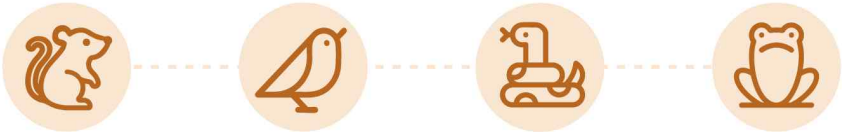
2025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야생동물 수출입·유통 신고 및 영업허가 업무 매뉴얼



본 매뉴얼은 2025년 12월 기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법령을 고려하여 작성된 자료로,
지자체 담당자께서는 변경사항 여부 확인 등 최신 정보 반영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야생동물 전과정관리제도 : 032-590-7447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 032-590-7482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운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야생동물 수출입·유통 신고 및 영업허가 업무 매뉴얼

2025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매뉴얼 개정이력】

일자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25.10.31	제정	매뉴얼 신규작성
’25.12.01	제도 설명내용 보완 및 자주하는질문 추가 등	권역별 설명회(’25.11) 주요 질의·건의사항 등 반영
’25.12.18	법령 조문 및 서식 수정 등	법제심사 완료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
’25.12.24	민원 보완 및 처리기한 연장 방법 안내 등 (p.83)	주요 질의·건의사항 반영
’26.1.6	Q&A 내용 보완 등	Q&A 내용 보완 등

매뉴얼 한 눈에 보기

제도 소개

제도 시행 개요

관련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2.12)

개정배경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국내 생태계 보호

시행일
2025년 12월 14일

주요개정내용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및 백색목록 외), 거래 신고제, 영업허가제



지정관리 야생동물과 백색목록 이란?

- 기존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구분 → **수입 및 거래 원칙적 금지**
- 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처리 후 수입·반입 가능**

야생동물

법정관리종
멸종위기종, CITES,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가축 등
기존 법령 준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백색목록
수입·거래를 위해 신고

백색목록 외
원칙적 수입·거래 금지
(공익·연구 목적 시 예외적 허가)

법 시행일('25. 12. 14) 이전에 키우던
동물이 백색목록에 없어도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하면,
해당 동물은 계속 기를 수 있어요.
단, 증식과 거래는 안돼요!



-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 중인 수출·수입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보관** 신고 필수

법정관리종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https://wims.mcee.go.kr

- **생물명 검색을 통해 해당 종의 법정관리종 여부 확인 가능**



야생동물 수출·수입 유통 민원 처리

담당 기관 구분

시·군·구청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및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및 백색목록 외)」 관련 민원 처리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민원 신청
-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 및 처리 가능
  (향후 온라인 접수·처리 가능 민원의 순차적 확대 예정)

유역·지방환경청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관련 민원 처리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및 처리

야생동물 수출·수입·유통 민원 처리 기준

구분	기존 법정관리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양도·양수 보관·폐사	신고	신고 →57쪽	신고 →65쪽	신고 →65쪽
수입·반입	허가	허가 →17쪽	신고 →48쪽	허가 →37쪽
수출·반출	허가	허가 →17쪽	신고 →53쪽	신고 →53쪽

신고 / 허가 : 원칙적 금지, 공익 연구 목적 시 예외적 허용

신규 민원

양도·양수 보관·폐사 온라인 신고 방법 (→72쪽)

- **신고 가능 대상**: 「수출·수입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및 백색목록 외)」

양도 · 양수 · 보관 · 폐사 신고 방법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 보관 / 양도 / 양수 / 폐사

접수(시·군·구청)

서류 검토 및 결재

신고확인증 교부 (우편 수령)



보관

- **보관 :** '25년 12월 14일 기준 보관중인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신고



양도·양수

- **양도·양수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백색목록 거래 시 양도자는 양도 신고, 양수자는 양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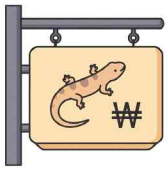
폐사

- **폐사 :** 보유 중인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시 신고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개요

- **야생동물 관련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신설**
- **내용:** ①CITES 대상종, ②수출·수입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③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일정 규모 이상 취급 시, 시·군·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득하도록 함
  * **생산업**의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양식업 면허** 또는 **육상·내수양식업 허가자**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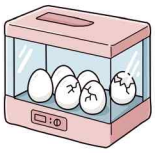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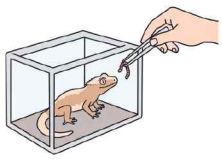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여 판매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

허가 대상 취급 규모

	야생동물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위탁관리업	**10마리** 이상 위탁관리	**20마리** 이상 위탁관리

영업허가 처리하기

처리 방법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허가 민원 처리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시설 조사 → 결재 → 승인통지 → 영업허가증 교부(15일 이내 처리)

검토 대상

영업허가대상 야생동물 취급 규모, 신청인 결격사유, 서류 요건, 시설 기준 등

영업허가 관련 민원

▼영업허가 관련 민원 절차는 본 매뉴얼의 해당 쪽 참고



영업허가

83쪽



영업자 정기·수시 점검

106쪽



영업허가 변경

125쪽



지위 승계 신고

131쪽



휴업·폐업 관련 조치

137쪽

목 차

매뉴얼 한 눈에 보기

① 제도 소개

② 야생동물 수출·수입 유통 민원 처리

③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Ⅰ. 제도 소개 ····· 1

1. 야생동물 허가·신고 제도 이해 ····· 1

2. 지자체 허가·신고 대상 야생동물 ····· 5

3. 야생동물 관련 영업허가 ····· 12

4. 주요 개념 및 용어 ····· 13

II. 수출·수입·반출·반입 민원 처리 ····· 17

1.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출·수입, 반출·반입 허가 ····· 17

2.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외) 수입·반입 허가 ····· 37

3.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수입·반입 신고 ····· 48

4.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반출 신고 ····· 53

III.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민원 처리 ····· 57

1.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양도·양수·보관 신고 ····· 57

2.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폐사 신고 ····· 61

3.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 ····· 65

4.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 ····· 68

5.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사용법 ····· 72

Ⅳ. 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관련 민원 처리 ····· 84

1. 영업허가 ····· 84

2. 영업자 점검 ····· 107

3. 허가 사항 변경 ····· 126

4. 지위승계 신고 ····· 132

5. 휴업·폐업 관련 조치 사항 ····· 138

Ⅴ. 위반 시 처분사항 ····· 139

1. 벌칙 ····· 139

2. 과태료 ····· 139

3. 행정처분 ····· 140

4.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 143

부록 1. 별지 서식 목록 ····· 145

부록 2. 별지 서식 외 서류 목록 ····· 146

자주 하는 질문 ····· 147

Ⅰ. 제도 소개

1. 야생동물 허가·신고 제도 이해

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2022년 12월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수입·거래 등 신고제도와 영업허가제가 도입**됩니다.

1)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국민 보호

◯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의 수입·사육·거래 단계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2) 국내 생태계 교란 방지

◯ 사육 과정에서 탈출·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이 국내 자연에 유입되어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 및 책임 강화

◯ 야생동물 사육·거래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영업허가제 시행을 통해 영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나. 주요 내용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의 허가·신고제

※ 법적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 생물종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로 정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총 334개 분류군(2만여 종)이 대상입니다.
- 기존에는 수출·반출·수입·반입이 허가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따라서, 수출·반출·수입·반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양도·양수·보관·폐사는 신고해야 합니다.

✓ **수출·수입 시 허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을 양도·양수·보관하려고 하거나 폐사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허가·신고제

※ 법적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22조의2~제22조의11

-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기존 법정관리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말합니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됩니다.
- 다만, 「백색목록 지정 고시」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입·거래가 가능한 종을 **백색목록**으로 지정하였으며, 해당 종을 수입·거래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백색목록은 포유류(9), 조류(17), 파충류(655), 양서류(207) 총 888 분류군입니다.
- 야생생물법 부칙 제4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미포함종)은 6개월 이내(2026년 6월 13일까지)**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 신고**하면 폐사 시까지 보관하거나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공적으로 증식하거나 양도·양수해서는 안 됩니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 거래 원칙적 금지**

-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기존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말합니다.

*기존 법정관리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 서식 동물 및 해양보호생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됩니다.

✓ **백색목록**

-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수입·거래가 가능한 종을 '백색목록'으로 지정합니다. 백색목록은 백색목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개정하여 고시됩니다.

-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를 통해 수입·유통이 가능합니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외)**

-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공익·연구 목적시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 법적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판매 또는 수입, 생산, 위탁관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야생동물 관련 영업 형태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4종으로 신설하고, 이에 대한 허가 기준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영업허가 대상 야생생물**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또는 「지정관리 야생동물」 대상* 영업허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 **영업허가 대상 영업의 종류와 규모**

- 영업은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으로 구분되며, 업종별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래의 규모 이상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허가가 필요합니다.
  -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합계)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두 종류 합산 기준으로) 50개체 이상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 ☞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합계)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할 때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 ☞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합계)을 일시적으로 영업장 내에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두 종류 합산 기준으로)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허가 기준 및 준수사항**

- 영업허가를 취득하려면 야생동물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야생동물 영업자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영업자는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며, 허가 유지를 위해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지자체 허가·신고 대상 야생동물

가.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1) 법적 근거

○ 야생생물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8

2) 정의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아닌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 포함)으로서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 및 야생생물의 가죽·털 등의 가공품을 포함합니다.

○ 위의 야생생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생물은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에서 제외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국제적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유입주의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 생태계교란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 가축(「축산법」 제2조제1호)

✓ **가축**: 「축산법」에서 정한 동물 중 농가(축산업 허가·등록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기준을 충족한 자)가 사육하는 동물 개체를 말합니다.

✓ **가축의 범위**: 종 단위가 아니라 사육되는 개체 기준으로 하며, 농가에서 실제로 사육하는 개체를 가축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둘기과(Columbidae)처럼 과 내에 여러 종이 존재하더라도, 농가에서 사육하는 비둘기 개체는 가축으로 인정하며, 야생생물법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축의 양도·양수:** 농가에서 사육된 개체는 다른 농가나 비농업인에게 거래되더라도 가축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농가로부터 구매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2차로 판매할 경우에는 야생생물법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위 사항은 축산법 소관부처인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이 포함된 내용으로, 가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농식품부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 **반려동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 위 목록은 현행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실험동물(「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실험동물**: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 등과 같은 척추동물을 말합니다.

※ 위 목록은 현행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허가·신고 의무

○ **수출·반출**하거나 **수입·반입**할 때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양도·양수·보관**하려고 하거나 **폐사**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대상 야생동물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에 포유류(53), 조류(230), 파충류(36), 양서류(15) 총 334 분류군(2만여 종)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목록에는 과(科, family), 속(屬, genus) 등 여러 종(種, species)의 생물을 포괄하는 상위분류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상 확인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 지정관리 야생동물

1) 법적 근거

○ 야생생물법 제2조제4호

2) 정의

○ 야생생물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말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국제적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 유입주의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 생태계교란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 가축(「축산법」 제2조제1호)
-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중 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동물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3) 허가·신고 의무

○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할 수 없습니다.

-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백색목록 지정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25.12.14)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은 신고를 통해 수입·반입할 수 있습니다.
-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으로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수입·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출·반출**할 때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양수·보관**하려고 하거나 **폐사**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백색목록

○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 만든 목록으로 신고를 통해 수입·반입이 가능합니다.

○ **수입·반입·수출·반출** 및 **양도·양수·보관·폐사**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백색목록 지정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25.12.14)로 포유류(9), 조류(17), 파충류(655), 양서류(207) 총 888 분류군을 백색목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백색목록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매년 평가하여 개정하므로 현행 고시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다. 지자체 허가·신고 대상 확인

○ 대상 생물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아래 단계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본 확인 절차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의 최신 세부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야생동물이 아래에 따라 관리되는 종인지 확인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가축, 반려동물, 실험동물

✓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 1단계: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인가요?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인지 확인합니다.

- 목록에 있다면 수출·반출·수입·반입 시 **허가**, 양도·양수·보관·폐사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목록에 없다면 2단계로 진행하세요.

▼ 2단계: 지정관리 야생동물인가요?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양생태계법」상 해양생물(해양만 서식) 및 해양보호생물 또는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해양생물 및 해양보호생물 또는 천연기념물이라면 각 법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기존 법에서 관리되는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말합니다. 어류, 곤충 등 다른 분류군이라면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반입, 양도·양수, 보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어서 3단계를 확인하세요.

▼ 3단계: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백색목록에 해당하나요?

○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백색목록' 해당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① 백색목록에 있는 경우

→ 수입·반입·수출·반출·양도·양수·보관·폐사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백색목록에 없는 경우

→ 수입·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학술연구 등 예외적 공익 목적이 있을 때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양도·양수·보관·폐사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수출·반출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호·관리하는 생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호·관리하는 동물

관련 법률	지정 유형	관련 고시 및 목록
야생생물법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3-45호, 2023. 2. 23., 일부개정] [별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9호, 2025. 1. 24., 일부개정] [별표1]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조 관련)
	유해 야생동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9호, 2025. 1. 24., 일부개정] [별표3] 유해 야생동물(제4조 관련)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9호, 2025. 1. 24., 일부개정] [별표4]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제8조 관련)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9호, 2025. 1. 24., 일부개정] [별표8]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제28조 관련)
	지정관리 야생동물 및 백색목록	야생생물법 제2조제4호
	백색목록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9호, 2025. 1. 24., 일부개정] [별표7]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제26조 관련)
	시·도 지정 보호 야생 동·식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9호, 2025. 1. 24., 일부개정] [별표6]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제24조 관련)
생물다양성법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시행 2019. 6. 1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9-100호, 2019. 6. 13., 일부개정] [별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안)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4. 10. 3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4-212호, 2024. 10. 31., 일부개정]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4. 12. 27.]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4-279호, 2024. 12. 27., 일부개정] [별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4. 10. 3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4-213호, 2024. 10. 31., 일부개정] [별표] 유입주의 생물

※ 다른 부처에서 보호·관리하는 생물

○ 기후에너지환경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 등은 소관 업무에 따라서 부처별 보호·관리 야생생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서 보호·관리하는 동물

정부 부처	관련 법률	지정 유형	관련 고시 및 목록
농림축산식품부	산림 보호법	특별산림보호대상종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12. 5. 2.] [산림청고시 제2012-32호, 2012. 4. 26., 제정]
	농업 생명 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 생명 자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3. 14.] [농촌진흥청고시 제2025-7호, 2025. 3. 14., 타법개정] 별표 4
		산림 생명 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 목록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시행 2022. 11. 21.] [산림청고시 제2022-102호, 2022. 11. 21., 일부개정] 별표 3
	축산법	가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1호, 행정규칙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시행 2023. 9. 5.] [고시 제2023-58호, 2023. 9. 5., 일부개정] 제2조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시행규칙 제3조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천연기념물(동·식물)	제11조 및 개별 고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생명 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 생명 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시행 2023. 11. 22.]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66호, 2023. 11. 22., 일부개정] 별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 해양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14.] [해양수산부령 제716호, 2025. 1. 14., 타법개정] [별표5]
		해양보호 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14.] [해양수산부령 제716호, 2025. 1. 14., 타법개정] [별표3]
		해양생태계교란 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14.] [해양수산부령 제716호, 2025. 1. 14., 타법개정] [별표4]
		해양 포유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14.] [해양수산부령 제716호, 2025. 1. 14., 타법개정] [별표2]
		회유성 해양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14.] [해양수산부령 제716호, 2025. 1. 14., 타법개정] [별표1]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약칭: 실험동물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8호, 2024. 1. 2., 일부개정]

3. 야생동물 관련 영업허가

가. 개요

○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관련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 야생생물법 제22조의5, 시행규칙 제29조의7제1항

나. 영업 종류

○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영업은 4가지로 업종으로 구분합니다.

-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다. 영업허가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영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야생생물법 제2조제3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 야생생물법 제2조제4호 지정관리 야생동물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8]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라. 영업 규모

○ 영업 종류에 따라서 일정 규모를 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의 영업허가 대상 규모 기준
  -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합계)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두 종류 합산 기준으로) **50개체 이상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합계)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할 때는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 무상 양도 개체수는 영업허가 규모(판매)에 미포함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영업허가 대상 규모 기준
  -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합계)을 일시적으로 영업장 내에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두 종류 합산 기준으로)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

4. 주요 개념 및 용어

가. 관련 법령

※ 본 설명서에서 다루는 모든 기준과 절차는 다음의 법령에 근거합니다.

※ 현행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신고·허가 제도의 기본사항, 용어 정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더욱 구체적인 절차, 서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야생생물법 관련 용어

◯ **야생생물:** 산, 들, 강 등 자연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원핵생물의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 위기에 처했거나, 곧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 **국제적 멸종위기종:** CITES(사이테스)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

◯ **지정관리 야생동물:**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은 제외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 국제적 멸종위기종
-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축산법」에 따른 가축
-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동물 및 해양보호생물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 **백색목록:**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고시하는 종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 및 야생생물의 가죽·털 등의 가공품을 포함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은 제외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 국제적 멸종위기종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축산법」에 따른 가축
-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

다. 야생동물 행위 관련 용어

○ **수출:** 야생동물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내보내 판매하는 것

○ **수입:** 야생동물을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구매하는 것

○ **반출:** 야생동물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수출 제외)

○ **반입:** 야생동물을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것(수입 제외)

※ 반입·반출의 예: 기르던 야생동물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외국에 가지고 나가는 경우

※ 수출, 수입, 반출, 반입의 의미가 「관세법」에서의 정의와 다를 수 있음

○ **양도:** 야생동물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

○ **양수:** 야생동물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타인으로부터 넘겨받는 것

※ 양도·양수는 소유권이나 점유 주체가 바뀌는 행위로 판매나 증여 등을 모두 포함

○ **보관:** 야생동물을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두는 것

※ 영업자가 수출입, 판매, 생산 등을 위해 보관하는 행위와 일반인이 키우는 행위 모두 포함

○ **폐사:** 야생동물이 죽는 것

라. 야생동물 영업 관련 용어

○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적으로 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마. 기타 주요 용어

○ **학명**

- 학술적으로 생물을 부르기 위해 세계 공통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이며, 라틴어로 표기됨
- 생물 분류학에서 하나의 종을 정확히 가리키는 이름으로, 속명 + 종소명 + (명명자 및 발표연도)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음

※ 일반적으로 검색·표기할 때는 명명자 및 연도를 생략하고 속명 + 종소명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국명**

-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말 이름

○ **보통명**

-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이름으로 지역·언어에 따라 다름

✓ **학명**: *Correlophus ciliatus* (Guichenot, 1866)

[속명] [종소명] [명명자]

✓ **국명**: 속눈썹도마뱀부치

✓ **보통명**: 크레스티드 게코

민원의 종류와 분류 번호

연번	민원명	분류 번호	서식
1	야생생물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신청	1480000-0047	별지 제29호서식
2	야생동물 양도, 양수, 보관 신고	1482000-0002	별지 제31호의2서식
3	야생동물 폐사 신고	1482000-0004	별지 제31호의3서식
4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반입 허가신청	1482000-0003	별지 제31호의4서식
5	백색목록 수입, 반입 신고	1482000-0005	별지 제31호의7서식
6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 반출 신고	1482000-0006	별지 제31호의8서식
7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 양수, 보관 신고	1482000-0007	별지 제31호의9서식
8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	1482000-0008	별지 제31호의10서식
9	야생동물 영업허가 신청	1482000-0009	별지 제31호의11서식
10	야생동물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변경허가 신청	1482000-0011	별지 제31호의12서식
11	야생동물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1482000-0010	별지 제31호의15서식
12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482000-0013	별지 제31호의16서식

Ⅱ. 수출·수입·반출·반입 민원 처리

1.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출·수입, 반출·반입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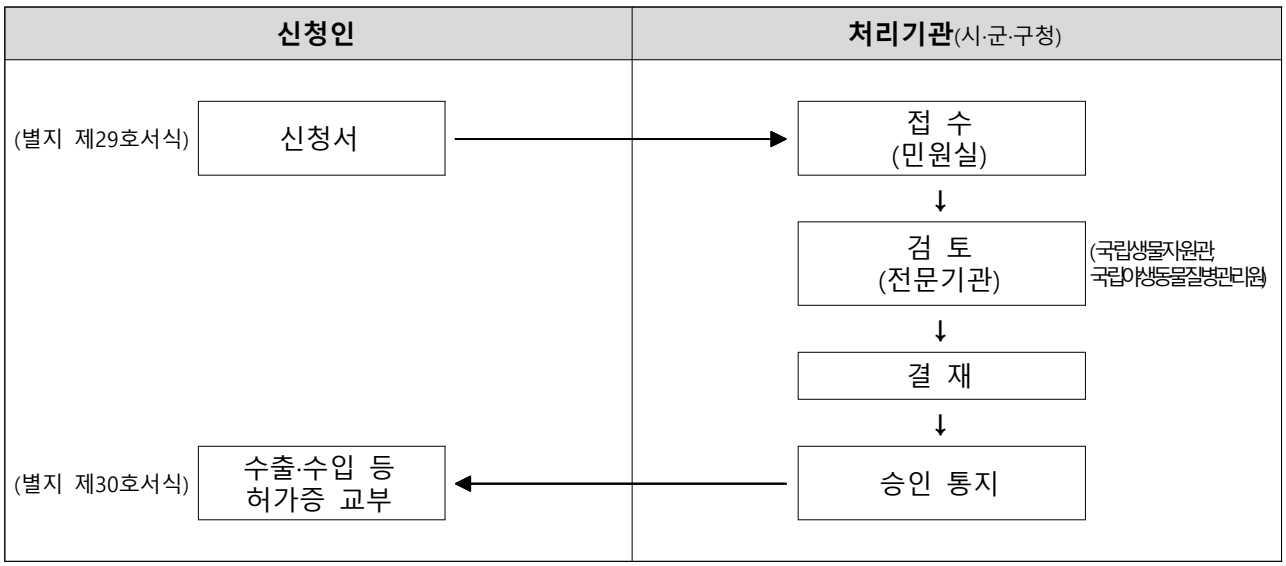
가.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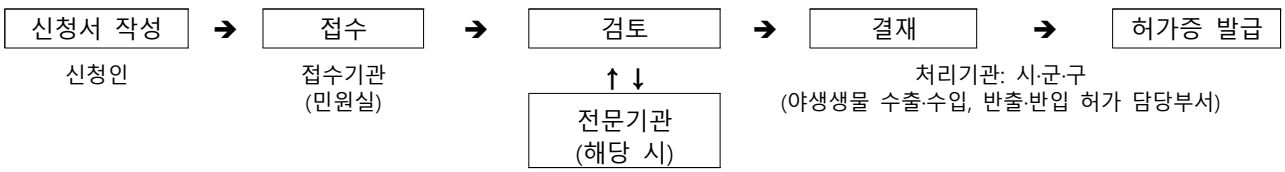
○ 야생생물법 제2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나. 허가 대상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8]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다. 허가 처리 절차





1) 접수: 민원인이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합니다.

2) 처리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인 경우(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는 **10일**, 가공품인 경우는 **5일**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신청한 생물이 **[별표 8]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에 해당하는지, 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검토합니다. 신청 목적이 법에서 정한 **학술 연구용, 관람용, 일시 체류자의 반려 목적,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의 번식·판매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세부기준**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상세 내용은 아래 '마. 허가신청 서류 검토 요령' 참조).

4) 의견 조회: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신청하는 야생생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인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등)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여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 처리: 제출 서류와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시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별지 제30호서식)**을 발급합니다.

6) 기록·관리: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 발급대장(별지 제31호서식)**에 허가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라. 허가신청 서류 목록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각 1부)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각 1부)
1. 허가신청서 2. 구비서류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등 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해당 시)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또는 가죽견본)	1. 허가신청서 2. 구비서류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야생생물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또 는 가죽견본)

마. 허가신청 서류 검토 요령

1)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별지 제29호4서식)

○ 신청인 정보 누락 여부

- 신청인: 신청서를 내는 주체(개인 또는 업체 등)
-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려는 회사, 동물을 반입하려는 개인 등

○ 실수요자 정보 누락 여부

- 실수요자: 동물을 실제로 사용할 최종 사용자
- 수입한 동물을 실제로 전시할 동물원, 직접 반입하여 키우려는 개인

○ 수출·수입 명세(⑦~⑮): 품명의 생물 정보(학명, 국명, 보통명) 등 기입 확인

- 학명: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과학 이름
- 국명: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
- 보통명: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이름

※ 예시: *Correlophus ciliatus*(학명), 속눈썹도마뱀부치(국명), 크레스티드 게코(보통명)

- ⑭ 용도: 해당하는 용도 한 가지 항목 선택

2) (수출)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에 기재된 동물의 종류(학명), 수량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3) (수출·반출)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 등의 증명서류

○ 증명서류(포획·채취 증명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양수 확인증 등)에 기재된 동물의 종류(학명), 수량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4)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

○ 출발지, 경유지(공항 등), 도착지까지의 전체 이동 경로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

○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5)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반드시 동물의 실물 사진 제출해야 함. 이는 인터넷 등에서 다운로드한 사진이나 유사한 다른 동물의 사진이 아닌, 실제로 거래 또는 이동하려는 해당 동물의 사진이어야 함

○ 가죽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단순히 가죽견본의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죽견본 그 자체를 제출해야 함

6) (수입)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물품매도확약서, 계약서 등)에 기재된 동물의 종류(학명), 수량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원(상호, 성명, 연락처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계약일, 서명 또는 날인 등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7) (수입·반입) 사용계획서

○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학술연구, 전시, 판매, 개인 사육 등)와 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일치하고 구체적인지 확인

○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게 채광·환기가 원활하고, 위생과 건강을 위해 온도·습도를 점검·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

8) (수입·반입)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등 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9) (수입·반입)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CITES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증명서류에 기재된 동물의 종류(학명), 수량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10) (수입·반입)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

○ 증명서류에 기재된 동물의 종류(학명), 수량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서류 점검표

번호	점검 서류
1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
2	입수 경위 확인 서류
3	사용계획서
4	수송계획서(해당 시)
5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해당 시)
6	원산지증명서 사본(해당 시)
7	인공 사육·재배 증명서류(해당 시)
8	사진 또는 견본

야생생물 수출·반출 허가 서류 점검표

번호	점검 서류
1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
2	수출 증빙 서류
3	적법 획득 증명서류
4	수송계획서(해당 시)
5	사진 또는 견본

바. 허가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함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수입·반입 또는 수출·반출하는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0. 11. 27.>

야생생물 [ ]수출 · [ ]수입 [ ]반출 · [ ]반입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인 경우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일 가공품인 경우는 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실수요자	④ 상호(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주소 (전화번호:)	

수출(수입) 명세

⑦ 품목 번호(HS)	⑧ 품명			⑨ 규격 (성별, 연령)	⑩ 수량	⑪ 단가 (US $)	⑫ 금액 (US $)	⑬ 수출입국
	학명	국명	보통명					
⑭ 용도	□ S □ P □ E □ Z □ T			⑮ 사육장 주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야생생물의 수출[ ]·수입[ ]·반출[ ] 또는 반입[ ]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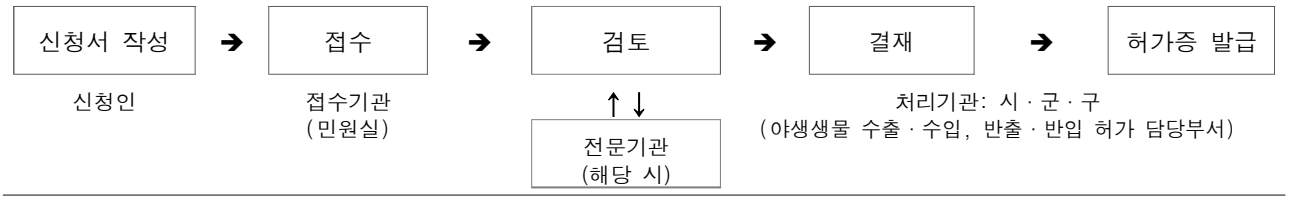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합니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III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합니다)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⑧ 품명란은 학명, 국명 및 보통명(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을 적습니다.
2. ⑨ 규격란은 살아 있는 야생생물의 경우에는 암수·연령 등을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생산품 또는 가공품을 적습니다.
3. ⑩ 수량란은 살아 있는 야생생물의 경우에는 마리 수, 그 밖의 경우에는 단위(Kg 등)를 적습니다.
4. ⑫ 금액란은 수출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FOB), 수입의 경우에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을 적습니다.
5. ⑬ 수출입국란은 수입국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적고, 수출국의 경우에는 신용장 등에 명시된 도착 국가를 적습니다.
6. ⑭ 용도란은 S(학술연구용), Z(동물원의 관람용), P(일시 체류 목적인 자가 애완용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1인당 1마리), T(번식·판매용, 인공증식된 개체만 가능), E(기타) 중에 하나만 선택합니다.

처리절차



(수입·반입하는 경우)

입수 경위 확인 서류(수입·반입: 물품매도확약서) (예시)

FIRMA HASCO
Jl. Dewi Sartika No.12 RT.4/RW.007,Cililitan,
Kec. Kramatjati Kab Kepulauan Seribu, DKI Jakarta, INDONESIA

INVOICE

Sold To : Jihopark Timber Reptile 225-6, Dongbaekjungang-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Invoice No.: 3/FH/II/2025 Data : Februari 11, 2025 Term :

Quantity	Name	Rate	Amount/Usd	
100	Tiliqua Gigas	35	usd	3.500
30	Lamprolephis Smaragdina	30	usd	900
26	Draco Volans	6	usd	156
10	Gonocephalus Kuhlii	15	usd	150
3	Hydrosaurus amboinensis	50	usd	150
20	Hydrosaurus Celebensis	40	usd	800
4	Hydrosaurus celebensis	110	usd	440
6	Gehyra Marginata	25	usd	150
20	Gekko Kuhli	10	usd	200
219	Total heads			
		Total Amount		6.446

AWB : 126-8329-4470
Live Animal

RUDI RANTONO

(수입·반입하는 경우)

사 용 계 획 서 (예 시)

<table>
<tr><td rowspan="2">① 신청인</td><td>상호(명칭)</td><td colspan="2">가나다 파충류</td><td>성명(대표자)</td><td>이영희</td></tr>
<tr><td colspan="2">사업장 소재지(연락처)</td><td colspan="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89-10, 2층
(031-777-1234)</td></tr>
<tr><td rowspan="2">② 실수요자</td><td>상호(명칭)</td><td colspan="2">가나다 파충류</td><td>성명(대표자)</td><td>이영희</td></tr>
<tr><td colspan="2">사업장 소재지(연락처)</td><td colspan="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89-10, 2층
(031-777-1234)</td></tr>
<tr><td rowspan="4">③ 수입(반입) 대상 야생동물</td><td colspan="3">국명/학명</td><td colspan="2">수량</td></tr>
<tr><td colspan="3">Gekko vittatus</td><td colspan="2">10마리</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④ 사용 목적</td><td>용도</td><td colspan="4">[ ] 전시·교육용 [✓] 상업(판매)용 [ ] 학술연구용
[ ] 개인 사육(반려)용</td></tr>
<tr><td rowspan="8">⑤ 세부 사용계획</td><td colspan="5">가. 사용 목적별 계획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목적에 구체적으로 서술)</td></tr>
<tr><td colspan="5">(상업용) 금번 도입하는 Gekko vittatus 10마리는 당사(가나다 파충류)에서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사육 환경 및 조건을 갖춘 구매자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td></tr>
<tr><td colspan="5">나. 사육 관리 계획</td></tr>
<tr><td colspan="5">(사육 시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사육장(2층 237호)에서 관리 예정입니다. 각 개체는 전문 파충류 사육장(가로 60cm x 세로 45cm x 높이 60cm)에 1마리씩 분리 사육합니다.</td></tr>
<tr><td colspan="5">다. 먹이 공급 및 위생</td></tr>
<tr><td colspan="5">영양 균형을 맞춘 전용 사료와 귀뚜라미 등 생먹이를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매일 물그릇을 세척하고 배설물을 제거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td></tr>
<tr><td colspan="5">라. 생태계 노출 시 대처방안</td></tr>
<tr><td colspan="5">사육시설은 잠금장치가 있는 전문 사육장으로 탈출이 어렵습니다. 만일의 탈출 상황 발생 시, 즉시 포획망 등을 이용해 개체를 회수하고,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및 환경청에 신고하여 외부 생태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td></tr>
</table>

(수입·반입 또는 수출·반출하는 경우: 살아있는 동물만 해당)

수 송 계 획 서 (예 시)

<table>
<tr><td rowspan="2">① 수출자</td><td>상호(명칭)</td><td>Netherlands Rare Bird Farm</td><td>성명</td><td>A. B. Smit</td></tr>
<tr><td>주소</td><td colspan="3">Hoofdstraat 15, 7924 PC Veeningen, Netherlands</td></tr>
<tr><td rowspan="2">② 수입자</td><td>상호(명칭)</td><td>코리아 조류 보전 센터</td><td>성명</td><td>홍길동</td></tr>
<tr><td>주소</td><td colspan="3">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123-45</td></tr>
<tr><td rowspan="2">③ 수송 대상 야생동물</td><td colspan="3">국명/학명</td><td>수량</td></tr>
<tr><td colspan="3">황오리 / Tadorna ferruginea</td><td>20마리</td></tr>
<tr><td rowspan="4">④ 운송 경로 및 수단</td><td>구분</td><td colspan="2">경로</td><td>수단</td></tr>
<tr><td>현지 운송</td><td colspan="2">네덜란드 베닝언(Veeningen) 농장 →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td><td>전용 트럭</td></tr>
<tr><td>국제 운송</td><td colspan="2">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AMS) → 인천국제공항(ICN)</td><td>항공 운송
(예: KLM, 항공편 KL0855)</td></tr>
<tr><td>국내 운송</td><td colspan="2">인천국제공항 → 충남 천안시 사육장</td><td>보온/보냉 탑차</td></tr>
<tr><td rowspan="4">⑤ 포장 및 운송 중 관리 방법</td><td colspan="4">가. 포장 방법</td></tr>
<tr><td colspan="4">•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살아있는 동물 운송 규정(Live Animals Regulation)을 준수합니다.
• 생물의 크기와 종류를 고려하여 제작된 나무·철망 재질의 전용 운송 케이지(예: 80x60x30cm)를 사용합니다.
• 운송 중 스트레스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케이지 내부에 부드러운 깔짚을 제공하고, 개체들이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분리 또는 합사하여 포장합니다.
• 외부 온도 변화에 대비하여 계절에 맞는 보온팩 또는 보냉팩을 사용합니다.</td></tr>
<tr><td colspan="4">나. 운송 중 관리</td></tr>
<tr><td colspan="4">• 수송 전후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운송 중에는 안정적인 온도(예: 10~15℃)를 유지합니다.
• 통관 절차 지연에 대비하여 사전에 공항 내 동물계류장(보온창고)을 예약합니다.
• 수송 전 과정은 동물 운송 경험이 있는 책임자(예: 박지호)가 동행하며 관리·감독합니다.</td></tr>
</table>

(수입·반입하는 경우: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등 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예시)



(수입·반입하는 경우: CITES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수출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사본 (예시)

Original(Duplicate/Triplic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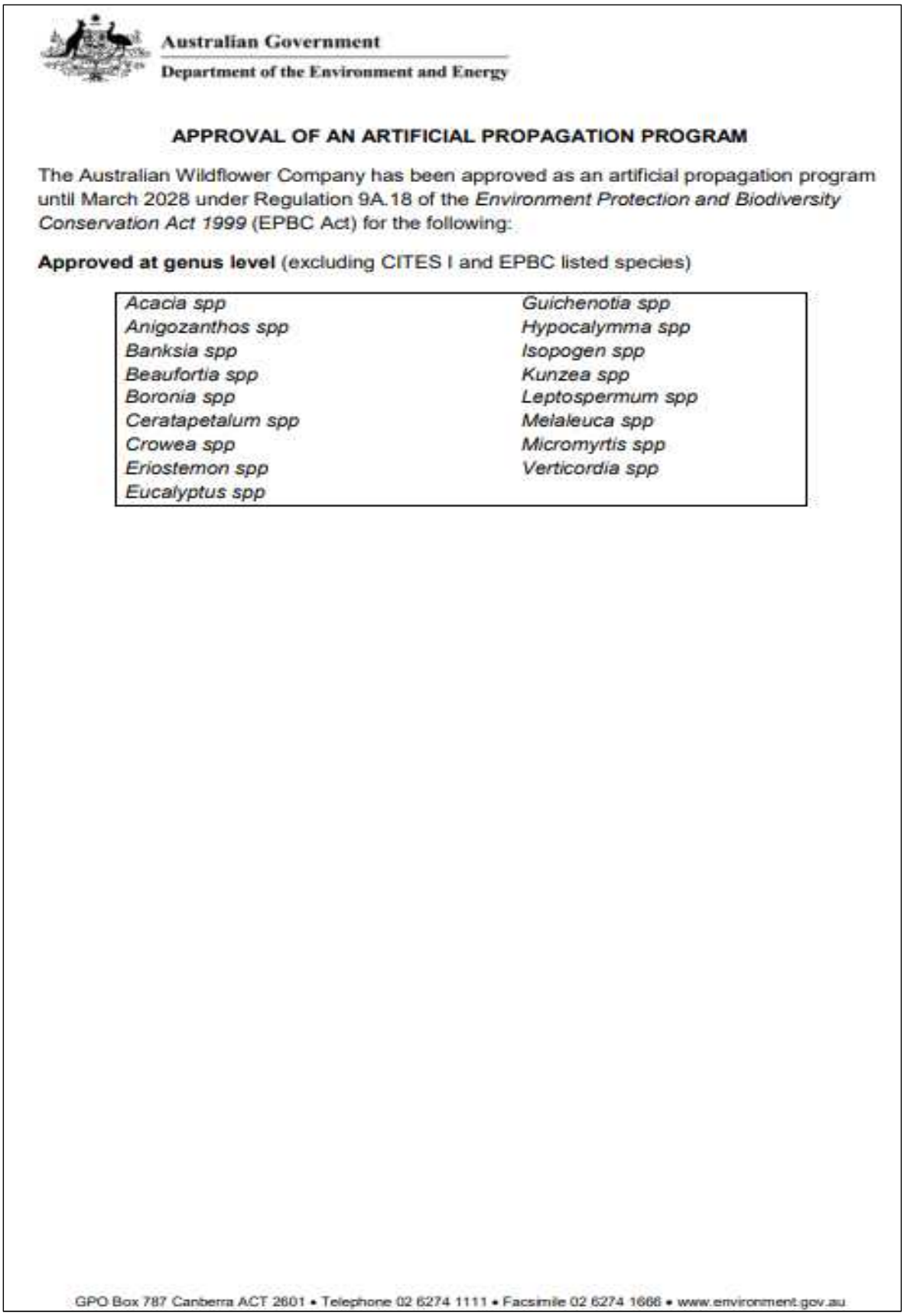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name, address, country) Wildlife Exports Co., Ltd. 123 Wildlife Trade Road, Nairobi, Kenya	Reference No. KOR-2025-000145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Eco Fashion Korea Co., Ltd. 45 Green Trade Street, Seoul, Republic of Korea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2025-09-01 Vessel's name / Aircraft: Korean Air Cargo KE 123 Port of Discharg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4. For Official Use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	WLC-OST-2025 (5 Crates)	nilgai(*Boselaphus tragocamelus*) rug HS Code: 4303.90	"N/A" (Not Applicable)	1,250 kg	INV-2025-091 / 2025-08-20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2.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Kenya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Korea Nairobi, Kenya / 2025-08-25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stamp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Nairobi, Kenya / 2025-08-26 Keny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수입·반입하는 경우: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

수출국 인공 사육·재배 야생생물 증명 서류(예시)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Energy

APPROVAL OF AN ARTIFICIAL PROPAGATION PROGRAM

The Australian Wildflower Company has been approved as an artificial propagation program until March 2028 under Regulation 9A.18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EPBC Act) for the following:

Approved at genus level (excluding CITES I and EPBC listed species)

Acacia spp	*Guichenotia spp*
Anigozanthos spp	*Hypocalymma spp*
Banksia spp	*Isopogen spp*
Beaufortia spp	*Kunzea spp*
Boronia spp	*Leptospermum spp*
Ceratapetalum spp	*Melaleuca spp*
Crowea spp	*Micromyrtis spp*
Eriostemon spp	*Verticordia spp*
Eucalyptus spp	

GPO Box 787 Canberra ACT 2601 • Telephone 02 6274 1111 • Facsimile 02 6274 1666 • www.environment.gov.au

(수입·반입 또는 수출·반출하는 경우: 사진 -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 실제로 허가를 신청하는 야생동물의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종을 판별할 수 있는 특징이 드러나는 사진이어야 함

※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발췌한 사진은 제출할 수 없음

허가 신청 야생생물 사진 및 견본(예시)

번호	학명	국명	사진 또는 견본
1	*Tamandua mexicana*	작은개미핥기	
2	*Anser albifron*	쇠기러기	

(수입·반입 또는 수출·반출하는 경우: 가죽견본 - 가죽제품의 경우)

※ 가죽견본의 사진이 아닌 실제 가죽견본을 제출해야 함

허가 신청 야생생물 사진 및 견본(예시)

번호	학명	국명	가죽견본
1	*Lama pacos*	알파카	

(수출·반출하는 경우)

수출 확인 서류(신용장)(예시)

신용장(Letter OF Credit)

신용장 번호	:	L/C No. 2025-001
개설일자	:	2025년 08월 27일
개설은행	:	한국은행 ○○지점 (Bank of Korea, ○○ Branch)
수익자(수출자)	:	ABC Co., Ltd.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신청인(수입자)	:	XYZ Trading Inc.
주소	:	1234 Harbor Road, Tokyo, Japan
금액	:	**USD** 100,000 (일금 미화 일십만불정)
화환어음	:	일람불 지급 (At Sight)
유효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적항	:	부산항 (Port of Busan)
도착항	:	Tokyo Port, Japan
선적기한	:	2025년 11월 30일 이내
물품 품목 (Description of Goods)	:	- 100 *Gekko japonicus* - 30 *Salamandrella keyserlingii*
허용서류	: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Certificate)

개설은행 담당자 서명: 홍 길 동

(*Authorized Signature*)

(수출·반출하는 경우)

※ 해당 서류는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를 받을 때 시·군·구청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3.25.>

(앞쪽)

제 000 호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

허가 받은 자	성 명	○○○	생년월일	0000.00.00.
허가사항	종 류	-		
	수 량	-		
	목 적	-	방 법	-
	기 간	0000.00.00. ~ 0000.00.00.		
	포획·채취 등 구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허가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준수사항

1.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채취 등을 한 야생생물은 포획·채취 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 해당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지역이 속한 시·군·구 밖으로 반출하거나 가공하여서는 안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 또는 함정 등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포획·채취 등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120g/㎡)

(뒤쪽)

야생동물 포획 신고									
연월일	야 생 동물명	수량	포획장소 (군・면)	담당자 확 인	연월일	야 생 동물명	수량	포획장소 (군・면)	담당자 확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5.3.25.>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제 호

야생생물 [ ]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 허가증

허가 받은자	성 명			실수요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허가 사항	품명(학명 및 보통명)	규격 (성별, 연령)	수량	용도	사육·재배장 주소	수출국·수입국
허가 조건						
유효 기간	수출허가					
	수입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 야생생물의 [ ]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

No.

[ ] Export
[ ] Import
[ ] Introduction to the sea
[ ] Introduction from the sea

Permit for wildlife

Permittee	Name			Consignee	Name		
	Date of Birth				Date of Birth		
Contents of permit	Item (Scientific Name and Common Name)	Description (sex/age)	Quantity	Use	Address of Breeding Farm	Export (Import) Country	
Conditions							
Last day of validity	Export						
	Import						

This is to certify the export(import, introduction from the sea) of the above wildlife under the paragraph of article 21 of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Law.

Date month year
Official Title
(Signature/Official Seal)
Name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 11. 27.>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 발급대장

구분	허가번호	허가일	수출(수입) 명세						신청인			실수요자			수출입국	용도	사육장 주소
			품명			규격 (성별, 연령)	수량	금액	상호	성명	주소	상호	성명	주소			
			학명	국명	보통명												

364㎜×257㎜(백상지 80g/㎡, 재활용품)

2.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외) 수입·반입 허가

가.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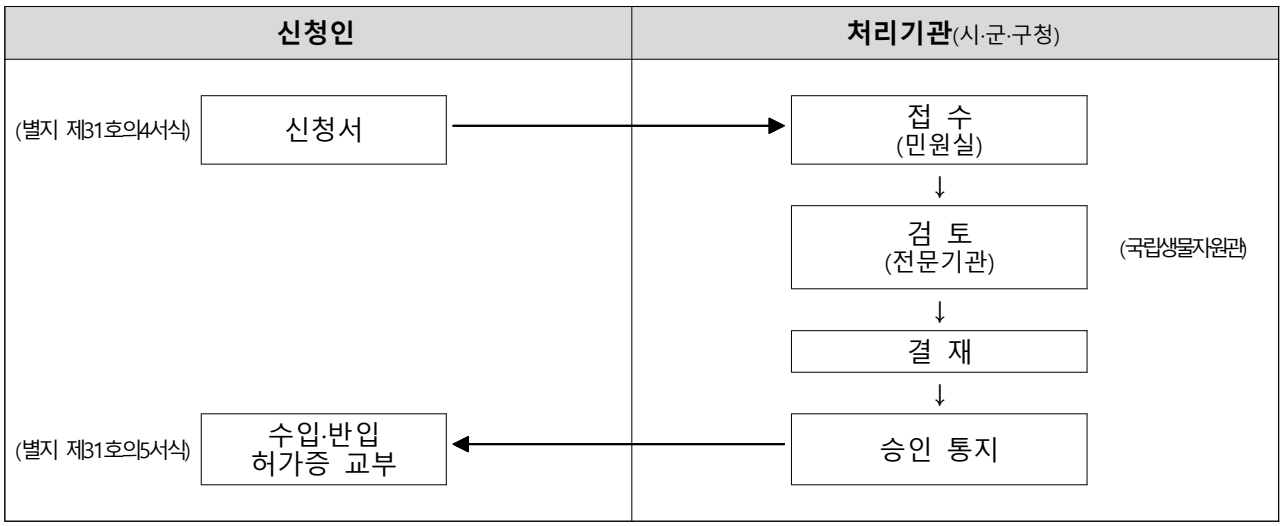
○ 야생생물법 제22조의2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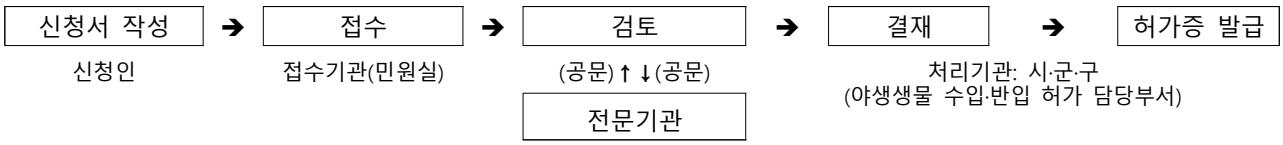
나. 허가 대상

○ 지정관리 야생동물(야생생물법 제2조제4호 지정관리 야생동물)

※ 단, 백색목록(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은 제외

다. 허가 처리 절차





1) 접수: 민원인이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신청서(별지 제31호의4서식)**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합니다.

2) 처리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10일**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신청한 생물이 **백색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맞는지, 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검토합니다. 신청 목적이 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관련, 감염병 관련, 지정된 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전시 목적 등 예외적인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상세 내용은 아래 '마. 허가신청 서류 검토 요령' 참조).

4) 의견 조회: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받으려면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종 판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 처리: 심사 및 의견 조회 후 허가 시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증(별지 제31호의5서식)**을 발급합니다.

6) 기록·관리: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증 발급대장(별지 제31호의6서식)**에 허가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라. 허가신청 서류 목록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각 1부)
1. 허가신청서
2. 구비서류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해당 시)
라.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해당 시)

마. 허가신청 서류 검토 요령

1)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신청서(별지 제31호의4서식)

○ 신청인 정보 누락 여부

- 신청인: 신청서를 내는 주체(개인 또는 업체 등)
-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려는 회사, 동물을 반입하려는 개인 등

○ 실수요자 정보 누락 여부

- 실수요자: 동물을 실제로 사용할 최종 사용자
- 수입한 동물을 실제로 전시할 동물원, 직접 반입하여 키우려는 개인

○ 수입 명세(⑦~⑭): 품명의 생물 정보(학명, 국명) 등 기입 확인

- 학명: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과학 이름
- 국명: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

※ 예시: *Correlophus ciliatus*(학명), 속눈썹도마뱀부치(국명)

- ⑬용도: 해당하는 용도 한 가지 항목 선택

2)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물품매도확약서, 계약서 등)에 기재된 동물의 종류(학명), 수량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원(상호, 성명, 연락처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계약일, 서명 또는 날인 등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3) 사용계획서

○ 허가 요건 검토 시 확인 사항

-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그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한 야생동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서식지외보전기관

나.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

라.「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마.「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와 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일치하고 구체적인지 확인

○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게 채광·환기가 원활하고, 위생과 건강을 위해 온도·습도를 점검·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

4) (수입·반입)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등 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5)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CITES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증명서류에 기재된 동물의 종류(학명), 수량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외) 수입허가 서류 점검표

번호	점검 서류
1	허가신청서
2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계획서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해당 시)
5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해당 시)

바. 허가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함

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3)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4서식]

지정관리 야생동물 [ ] 수입 [ ] 반입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실수요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입·반입 명세

품목번호 (HS)	품명		수량	단가(US $) ※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 기재	금액 (US $)	수입국 (원산지)
	학명	국명				

용도	[ ] 학술 연구 [ ] 보호·복원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 등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교육
사육장 소재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 ]수입, [ ]반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합니다)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 전문기관		처리기관: 시·군·구		

입수 경위 확인 서류(수입·반입: 물품매도확약서)(예시)

FIRMA HASCO
Jl. Dewi Sartika No.12 RT.4/RW.007,Cililitan,
Kec. Kramatjati Kab Kepulauan Seribu, DKI Jakarta, INDONESIA

INVOICE

Sold To :		
Jihopark Timber Reptile 225-6, Dongbaekjungang-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Invoice No.: 3/FH/II/2025 Data : Februari 11, 2025 Term :

Quantity	Name	Rate	Amount/Usd	
100	Tiliqua Gigas	35	usd	3.500
30	Lamprolephis Smaragdina	30	usd	900
26	Draco Volans	6	usd	156
10	Gonocephalus Kuhlii	15	usd	150
3	Hydrosaurus amboinensis	50	usd	150
20	Hydrosaurus Celebensis	40	usd	800
4	Hydrosaurus celebensis	110	usd	440
6	Gehyra Marginata	25	usd	150
20	Gekko Kuhli	10	usd	200
219	Total heads			
	Total Amount			6.446

AWB : 126-8329-4470
Live Animal

RUDI RANTONO

사 용 계 획 서 (예 시)

<table>
<tr><td rowspan="2">① 신청인</td><td>상호(명칭)</td><td colspan="2">라파 동물원</td><td>성명(대표자)</td><td>이영희</td></tr>
<tr><td colspan="2">사업장 소재지(연락처)</td><td colspan="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89-10, 2층
(031-777-1234)</td></tr>
<tr><td rowspan="2">② 실수요자</td><td>상호(명칭)</td><td colspan="2">라파 동물원</td><td>성명(대표자)</td><td>이영희</td></tr>
<tr><td colspan="2">사업장 소재지(연락처)</td><td colspan="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89-10, 2층
(031-777-1234)</td></tr>
<tr><td rowspan="2">③ 수입(반입) 대상 야생동물</td><td colspan="3">국명/학명</td><td colspan="2">수량</td></tr>
<tr><td colspan="3">줄무늬하이에나 / Hyaena hyaena</td><td colspan="2">3마리</td></tr>
<tr><td>④ 사용 목적</td><td>용도</td><td colspan="4">[✓] 전시·교육용 [ ] 상업(판매)용 [ ] 학술연구용
[ ] 개인 사육(반려)용</td></tr>
<tr><td rowspan="8">⑤ 세부 사용계획</td><td colspan="5">가. 사용 목적별 계획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목적에 구체적으로 서술)</td></tr>
<tr><td colspan="5">동물원(또는 전시시설) 내 전용 사육 시설에서 사육하며, 관람객을 대상으로 줄무늬하이에나의 생태와 습성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td></tr>
<tr><td colspan="5">나. 사육 관리 계획</td></tr>
<tr><td colspan="5">동물원 내 대형 포유류 사육 규정에 맞춰 설계된 야외 방사장 및 내실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방사장에는 하이에나의 습성을 고려한 은신처, 그늘, 물웅덩이 등을 제공하고, 내실에는 온도 및 습도 조절 장치를 갖추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전문 사육사가 정기적으로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사육 환경을 조성합니다.</td></tr>
<tr><td colspan="5">다. 먹이 공급 및 위생</td></tr>
<tr><td colspan="5">영양학적 균형을 고려하여 신선한 닭고기, 소고기 등 육류를 주식으로 공급하며, 칼슘 및 비타민 보충제를 정기적으로 추가 급여합니다. 사육장 내외부는 매일 청소하고 소독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며, 음수대는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td></tr>
<tr><td colspan="5">라. 생태계 노출 시 대처방안</td></tr>
<tr><td colspan="5">사육 시설은 이중 문 구조와 견고한 잠금장치를 갖추어 탈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만일의 탈출 상황 발생 시, 즉시 관람객 대피 등 안전 확보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사내 비상 대응팀이 마취총 등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포획합니다. 동시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환경청 및 인근 경찰서·소방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td></tr>
</table>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등 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예시)



(CITES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수출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사본(예시)

ARAB REPUBLIC OF EGYPT Ministry of Environment 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 (EEAA)

CERTIFICATE OF EXPORT

1. Exporter (Name and Address) Giza Zoological Garden 123 Nile Road, Giza, Egypt			**Certificate No.:** EG-EXP-2025-0789 **Date of Issue:** 2025-10-20
2. Consignee (Name and Address) Korean Peninsula Wildlife Conservation Institute 456 Baengnyeong-ro, Inje-gun, Gangwon-do, Republic of Korea			
3. Issuing Authority 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 (EEAA) Cairo, Egypt			**4. Purpose of Transaction** Zoological exchange / Public display (Z)
5. Species (Scientific and Common Name)	**6. Description (Sex, ID Marks, etc.)**	**7. Quantity**	**8. Country of Origin**
Hyaena hyaena (Striped Hyena)	Live Specimen 1.0 (Male) Born: 2024-01-15 (Captive-bred) Microchip: 702A...01	1 (One)	EGYPT (EG)
9. Declaration by the Issuing Authorit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pecimen(s) listed above: a) Were legally acquired within the Arab Republic of Egypt. b)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CITES Article V, paragraph 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5서식]

제 호

지정관리 야생동물 [ ]수입 [ ]반입 허가증

허가 받은 자	상호(명칭) 성명 및 생년월일		실수요자	상호(명칭) 성명 및 생년월일	
허가 사항	품명(학명 및 국명)	수량	용도	사육장 소재지	수입국(원산지)
비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 ]수입, [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6서식]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증 발급대장

구분																		
허가번호																		
허가일																		
수입·반입 명세																		
	품명																	
		학명																
		국명																
	수량																	
	금액																	
신청인																		
	상호 (명칭)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실수요자																		
	상호 (명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입국 (원산지)																		
용도																		
사육장 소재지																		

364㎜×257㎜(백상지 80g/㎡, 재활용품)

3.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수입·반입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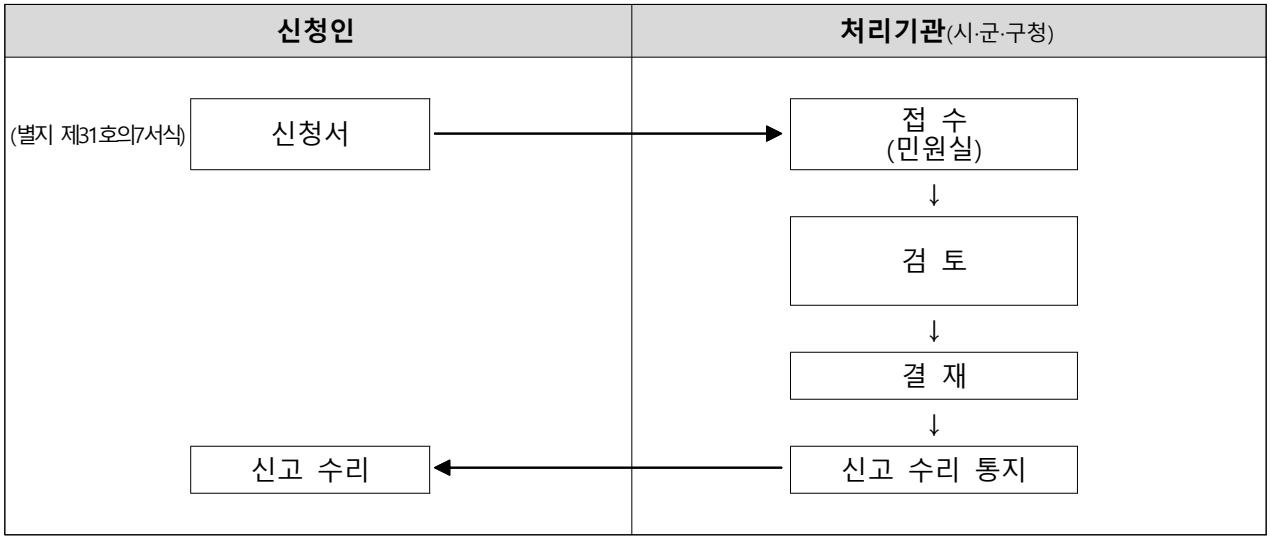
가.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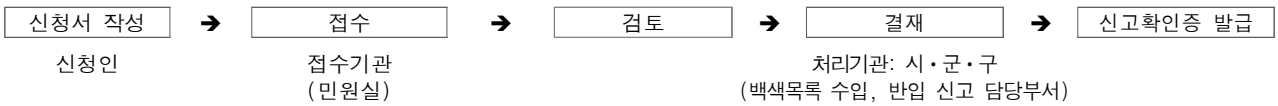
○ 야생생물법 제22조의2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제1항

나. 신고 대상

○ 백색목록(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다. 신고 처리 절차





1) 접수: 민원인이 **백색목록 수입·반입 신고서(별지 제31호의7서식)**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합니다.

2) 처리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10일**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신청한 생물이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맞는지, 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검토합니다(상세 내용은 아래 '마. 신고 서류 검토 요령' 참조).

4) 처리: 심사 후 수리하면 **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라. 신고 서류 목록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각 1부)
1. 신고서
2. 구비서류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해당 시)

마. 신고 서류 검토 요령

1) 백색목록 수입·반입 신고서(별지 제31호의7서식)

○ 신청인 정보 누락 여부

- 신청인: 신청서를 내는 주체(개인 또는 업체 등)
-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려는 회사, 동물을 반입하려는 개인 등

○ 실수요자 정보 누락 여부

- 실수요자: 동물을 실제로 사용할 최종 사용자
- 수입한 동물을 실제로 전시할 동물원, 직접 반입하여 키우려는 개인

○ 수입 명세(⑦~⑫): 품명의 생물 정보(학명, 국명) 등 기입 확인

- 학명: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과학 이름
- 국명: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

※ 예시: *Correlophus ciliatus*(학명), 속눈썹도마뱀부치(국명)

2)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물품매도확약서, 계약서 등)에 기재된 동물의 종류(학명), 수량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원(상호, 성명, 연락처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계약일, 서명 또는 날인 등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3)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CITES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증명서류에 기재된 동물의 종류(학명), 수량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백색목록 야생동물 수입·반입 신고 처리 점검표

번호	점검 서류
1	신고서
2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해당 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7서식]

백색목록 [ ] 수입 [ ] 반입 신고서(신고확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실수요자	상호(성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수입·반입 명세

품목번호 (HS)	품명		수량	단가(US $) ※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 기재	금액 (US $)	수입국 (원산지)
	학명	국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생물의 [ ]수입, [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III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자르는 선

제 호

백색목록 [ ]수입 [ ]반입 신고확인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 ]수입, [ ]반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입수 경위 확인 서류(수입·반입: 물품매도확약서)(예시)

FIRMA HASCO
Jl. Dewi Sartika No.12 RT.4/RW.007,Cililitan,
Kec. Kramatjati Kab Kepulauan Seribu, DKI Jakarta, INDONESIA

INVOICE

Sold To :		Invoice No.: 3/FH/II/2025
Jihopark Timber Reptile 225-6, Dongbaekjungang-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Data : Februari 11, 2025 Term :

Quantity	Name	Rate	Amount/Usd	
100	Tiliqua Gigas	35	usd	3.500
30	Lamprolephis Smaragdina	30	usd	900
26	Draco Volans	6	usd	156
10	Gonocephalus Kuhlii	15	usd	150
3	Hydrosaurus amboinensis	50	usd	150
20	Hydrosaurus Celebensis	40	usd	800
4	Hydrosaurus celebensis	110	usd	440
6	Gehyra Marginata	25	usd	150
20	Gekko Kuhli	10	usd	200
219	Total heads			
	Total Amount			6.446

AWB : 126-8329-4470
Live Animal

RUDI RANTONO

(CITES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수출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사본(예시)

KINGDOM OF BELGIUM Federal Public Service Health, Food Chain Safety and Environment

CERTIFICATE OF ORIGIN

1. Exporter (Name and Address) Flanders Ornamental Birds BV 22 Vogel Straat, 1000 Brussels, Belgium			Certificate No.: BE-CF-2025-1102 Date of Issue: 2025-10-22
2. Consignee (Name and Address) Blue Feather Rare Bird Center 909 Geumgang-ro, Nons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3. Issuing Authority CITES Management Authority – Belgium Brussels, Belgium		4. Purpose of Transaction Captive Breeding (B)	
5. Species (Scientific and Common Name)	6. Description (Sex, ID Marks, etc.)	7. Quantity	8. Country of Origin
Pavo cristatus (Indian Peafowl)	Live Specimens (Captive-bred) 2.2 (Two Males, Two Females) Leg Bands: BEL-25-P01 ~ P04	4 (Four)	BELGIUM (BE)
9. Declaration by the Issuing Authorit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live specimens of Pavo cristatus described herein: a) Are confirmed to be captive-bred (Source Code C) at the facility listed in Box 1. b) This Certificate of Origi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CITES Article V, paragraph 3.			

4.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반출 신고

가.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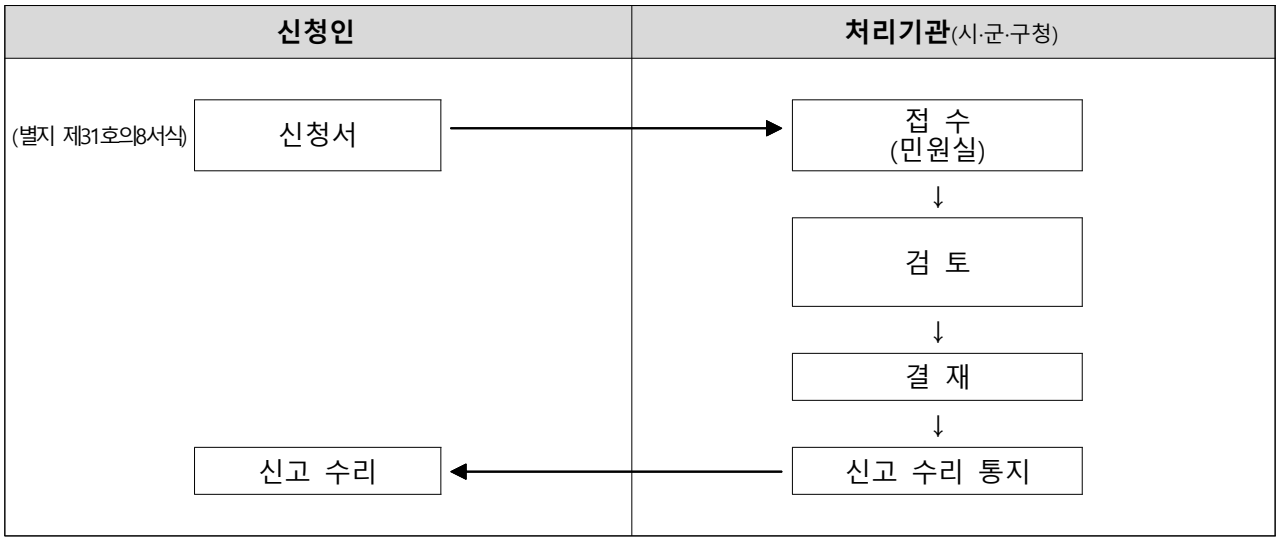
○ 야생생물법 제22조2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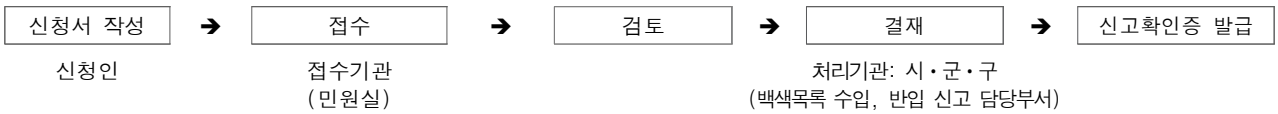
나. 신고 대상

○ 지정관리 야생동물(야생생물법 제2조제4호 지정관리 야생동물)

※ 백색목록을 포함한 모든 지정관리 야생동물

다. 신고 처리 절차





1) 접수: 민원인이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반출 신고서(별지 제31호의8서식)**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합니다.

2) 처리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10일**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신청한 생물이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해당하는지, 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검토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마. 신고 서류 검토 요령' 참조).

4) 처리: 심사 후 수리하면 **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라. 신고 서류 목록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각 1부)
1. 신고서 2. 구비서류 - 신용장, 상업송장(인보이스) 등 수출·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신고 서류 검토 요령

1)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반출 신고서(별지 제31호의8서식)

○ 신청인 정보 누락 여부

- 신청인: 신청서를 내는 주체(개인 또는 업체 등)
-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려는 회사, 동물을 반입하려는 개인 등

○ 실수요자 정보 누락 여부

- 실수요자: 동물을 실제로 사용할 최종 사용자
- 수입한 동물을 실제로 전시할 동물원, 직접 반입하여 키우려는 개인

○ 수출 명세(⑦~⑫): 품명의 생물 정보(학명, 국명) 등 기입 확인

- 학명: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과학 이름
- 국명: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

※ 예시: *Correlophus ciliatus*(학명), 속눈썹도마뱀부치(국명)

2) 신용장, 상업송장(인보이스)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에 기재된 동물의 종류(학명), 수량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반출 신고 서류 점검표

번호	점검 서류
1	신고서
2	신용장, 상업송장(인보이스)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8서식]

지정관리 야생동물 [ ] 수출 [ ] 반출 신고서(신고확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실수요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수출·반출 명세

품목번호 (HS)	품명		수량	단가(US $) ※ 본선인도가격(FOB) 기재	금액 (US $)	수출국 ※ 신용장, 상업송장(인보이스) 등에 명시된 도착 국가 기재
	학명	국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 ]수출, [ ]반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용장 등 수출·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제 호

지정관리 야생동물 [ ]수입 [ ]반출 신고확인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 ]수출, [ ]반출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수출 확인 서류(신용장)(예시)

신용장(Letter OF Credit)

신용장 번호	:	L/C No. 2025-001
개설일자	:	2025년 08월 27일
개설은행	:	한국은행 ○○지점 (Bank of Korea, ○○ Branch)
수익자(수출자)	:	ABC Co., Ltd.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신청인(수입자)	:	XYZ Trading Inc.
주소	:	1234 Harbor Road, Tokyo, Japan
금액	:	**USD** 100,000 (일금 미화 일십만불정)
화환어음	:	일람불 지급 (At Sight)
유효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적항	:	부산항 (Port of Busan)
도착항	:	Tokyo Port, Japan
선적기한	:	2025년 11월 30일 이내
물품 품목 (Description of Goods)	:	- 100 *Leiolepis guttata* - 30 *Lialis jicari*
허용서류	: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Certificate)

개설은행 담당자 서명: 홍 길 동

(*Authorized Signature*)

Ⅲ.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민원 처리

1.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양도·양수·보관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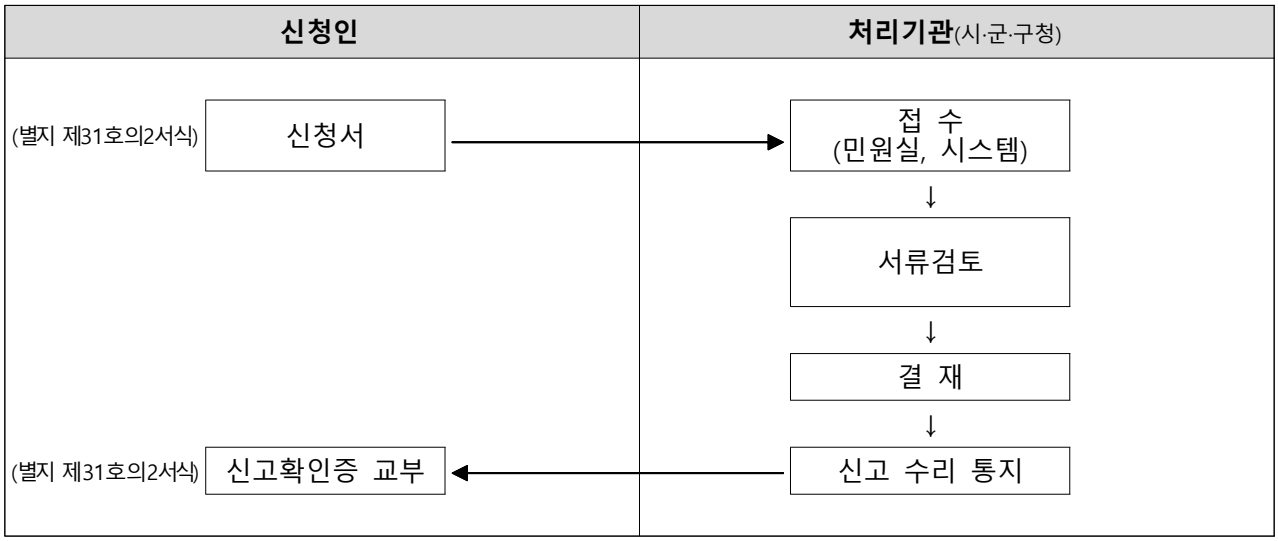
가.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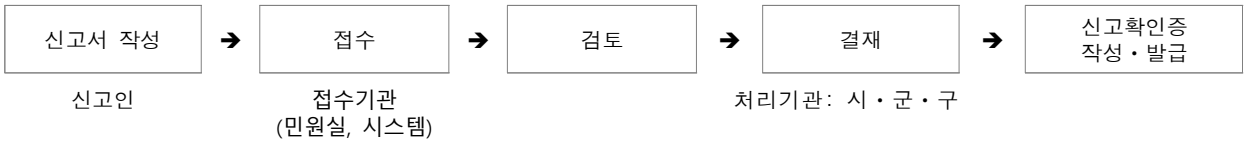
○ 야생생물법 제21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나. 신고 대상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8]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다. 신고 처리 절차





1) 접수: 민원인이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합니다.

2) 처리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7일**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3) 검토: 신청한 생물이 **[별표 8]** 대상이 맞는지, 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검토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마. 신고 서류 검토 요령' 참조)

4) 처리: 심사 후 수리하면 **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라. 신고 신청 서류 목록

양도·양수·보관하는 경우(각 1부)
1. 신고서 2. 구비서류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해당 시)

마. 신고서류 검토 요령

1)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신고서(전자문서 신고서 포함)

○ 양도인 정보 누락 여부

- 양도인: 동물을 넘겨주는 사람

○ 양수인(보관인) 정보 누락 여부

- 양수인: 동물을 넘겨받는 사람

○ 생물 정보(학명, 수량, 용도, 양도 사유/보관 사유) 기입 확인

- 학명: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과학 이름
- 국명: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

※ 예시: *Correlophus ciliatus*(학명), 속눈썹도마뱀부치(국명)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등을 양수하려는 경우만 해당)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양도·양수·보관 신고 서류 점검표

번호	점검 서류
1	신고서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양수하려는 경우만 해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야생동물 [ ] 양도 [ ] 양수 [ ] 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양수인 (보관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야생동물 정보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학명	수량	용도	양도사유(보관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의 [ ]양도, [ ]양수, [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양수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제 호

야생동물 [ ]양도 [ ]양수 [ ]보관 신고확인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 ]양도, [ ]양수, [ ]보관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등을 양수하려는 경우만 해당)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예시)



2.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폐사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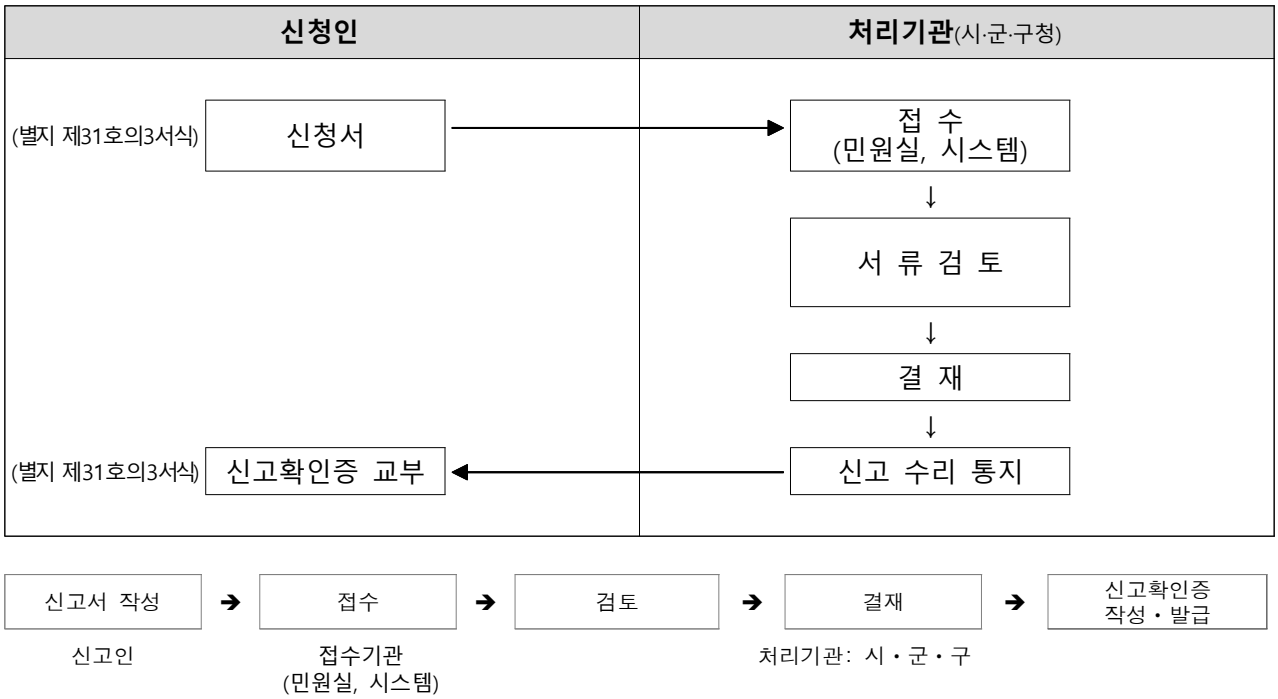
가. 법적 근거

◯ 야생생물법 제21조제3항

나. 신고 대상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8]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다. 신고 처리 절차



1) 접수: 민원인이 **야생생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별지 제31호의3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합니다.

2) 처리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3일**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신청한 생물이 **[별표 8]** 대상이 맞는지, 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검토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마. 신고서류 검토 요령' 참조)

4) 처리: 심사 후 수리하면 **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라. 신고 신청 서류 목록

폐사한 경우(각 1부)
1. 신고서
2. 구비서류 - 사진, 영상 등 폐사 증명 자료

마. 신고서류 검토 요령

1)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전자문서 신고서 포함)

○ 신고인 정보 누락 여부

○ 생물 정보(학명, 수량, 폐사 사유, 처리계획 등) 기입 확인

- 학명: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과학 이름
- 국명: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

※ 예시: *Correlophus ciliatus*(학명), 속눈썹도마뱀부치(국명)

- 폐사 사유: 동물이 죽은 사유(질병, 노화, 사고 등)
- 처리계획: 사체 처리는 일반쓰레기 배출이나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

※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거나 버려서는 안 됨(「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2) 사진, 영상 등 폐사 증명자료

○ 폐사를 증명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제출되었는지 확인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폐사 신고 서류 점검표

번호	점검 서류
1	신고서
2	사진, 영상 등 폐사 증명 자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성명)	연락처
	사육장소	

	학명	수량	폐사사유	처리계획
야생동물 정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의 폐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제 호

야생동물 폐사 신고확인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폐사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작성방법

야생동물 정보의 폐사사유란에는 야생동물의 폐사사유와 그로 인한 폐사일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폐사 신고 증빙 사진(예시)

번호	학명	국명	사진 또는 영상
1	*Aix galericulata*	원앙	

3.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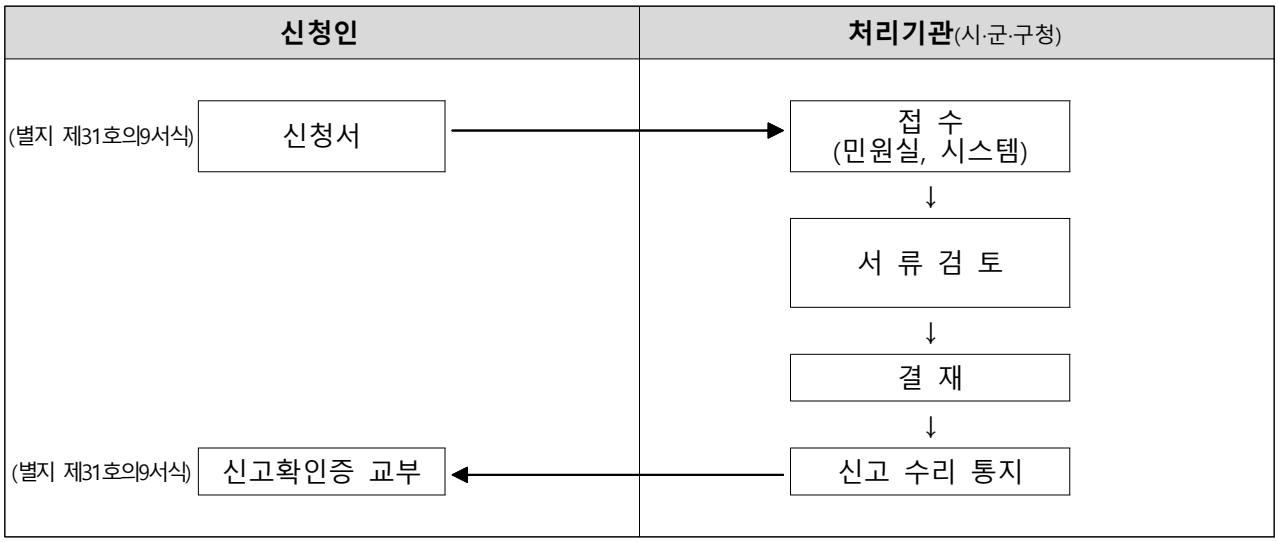
가. 법적 근거

◯ 야생생물법 제22조의4제2항

나. 신고 대상

○ 예외적 허가를 받아 수입·반입한 지정관리 야생동물과 백색목록(야생생물법 제22조의4제1항)

다. 신고 처리 절차





1) 접수: 민원인이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별지 제31호의9서식)**을 제출하면 접수합니다.

2) 처리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7일**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3) 검토: 신청한 생물이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맞는지, 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검토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마. 신고 서류 검토 요령' 참조)

4) 처리: 심사 후 수리하면 **신고 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라. 신고 신청 서류 목록

양도·양수·보관하는 경우(1부)
1. 신고서

마. 신고 서류 검토 요령

1)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

○ 양도인 정보 누락 여부

- 양도인: 동물을 넘겨주는 사람

○ 양수인(보관인) 정보 누락 여부

- 양수인: 동물을 넘겨받는 사람

○ 생물 정보(학명, 수량, 용도, 양도 사유/보관 사유) 기입 확인

- 학명: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과학 이름
- 국명: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

※ 예시: *Correlophus ciliatus*(학명), 속눈썹도마뱀부치(국명)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 서류 점검표

번호	점검 서류
1	신고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9서식]

지정관리 야생동물 [ ] 양도 [ ] 양수 [ ] 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양수인 (보관인)	상호(성명)	연락처
	주소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보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학명	수량	용도	양도사유(보관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 ]양도, [ ]양수, [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자르는 선

제 호

지정관리 야생동물 [ ]양도 [ ]양수 [ ]보관 신고확인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 ]양도, [ ]양수, [ ]보관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4.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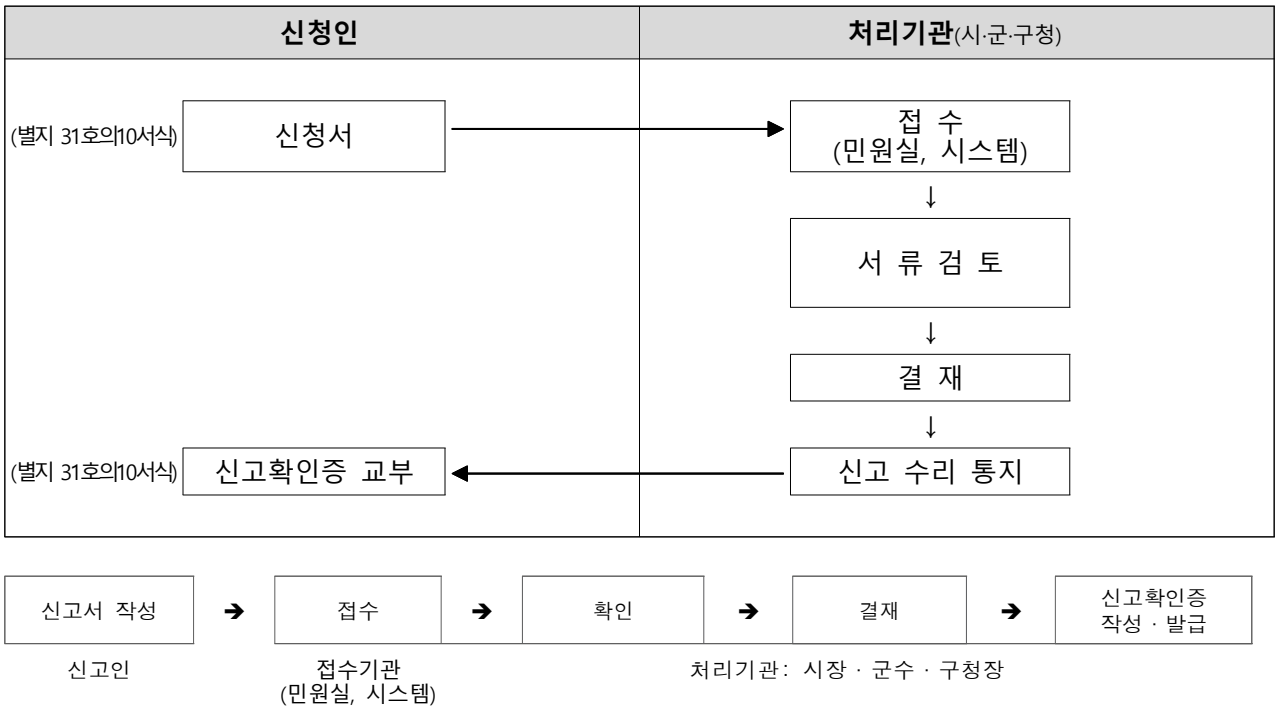
가. 법적 근거

○ 야생생물법 제22조의4제2항

나. 신고 대상

○ 예외적 허가를 받아 수입·반입한 지정관리 야생동물과 백색목록(야생생물법 제22조의4제1항)

다. 신고 처리 절차



1) 접수: 민원인이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별지 제31호의10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합니다.

2) 처리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3일**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신청한 생물이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맞는지, 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검토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마. 신고 서류 검토 요령' 참조)

4) 처리: 심사 후 수리하면 **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라. 신고 신청 서류 목록

폐사한 경우(각 1부)
1. 신고서 2. 구비서류 가. 사진, 영상 등 폐사 증명 자료

마. 신고 서류 검토 요령

1)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

○ 신고인 정보 누락 여부

○ 생물 정보(학명, 수량, 폐사 사유, 처리계획) 기입 확인

- 학명: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과학 이름
- 국명: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

※ 예시: *Correlophus ciliatus*(학명), 속눈썹도마뱀부치(국명)

- 폐사 사유: 동물이 죽은 사유(질병, 노화, 사고 등)
- 처리계획: 사체 처리는 일반쓰레기 배출이나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

※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거나 버려서는 안 됨(「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2) 사진, 영상 등 폐사 증명자료

○ 폐사를 증명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제출되었는지 확인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 서류 점검표

번호	점검 서류
1	신고서
2	폐사 증명자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0서식]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성명)	연락처
	사육장소	

	학명	수량	폐사사유	처리계획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폐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제 호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확인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폐사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작성방법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보의 폐사사유란에는 해당 야생동물의 폐사사유와 그로 인한 폐사일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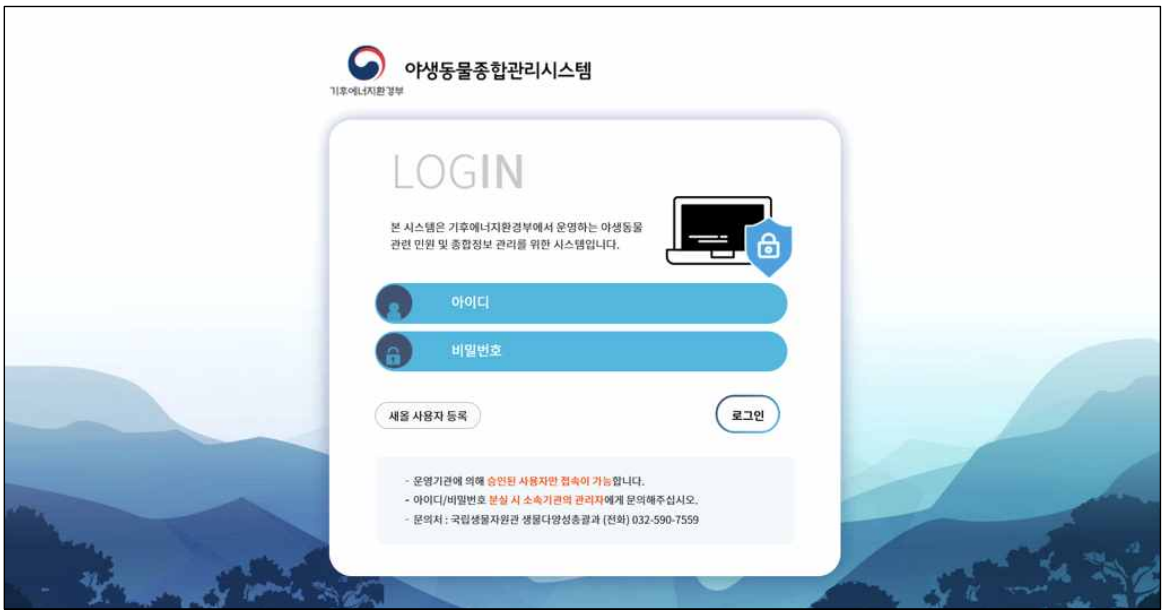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폐사 신고 증빙 사진(예시)

번호	학명	국명	사진 또는 영상
1	*Petaurus breviceps*	슈가글라이더	

5.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사용법

가. 접속 방법



○ 내부망에서 시스템 접속 : (주소) https://wimsin.mcee.go.kr

○ '새올 사용자 등록' 버튼을 통해 지자체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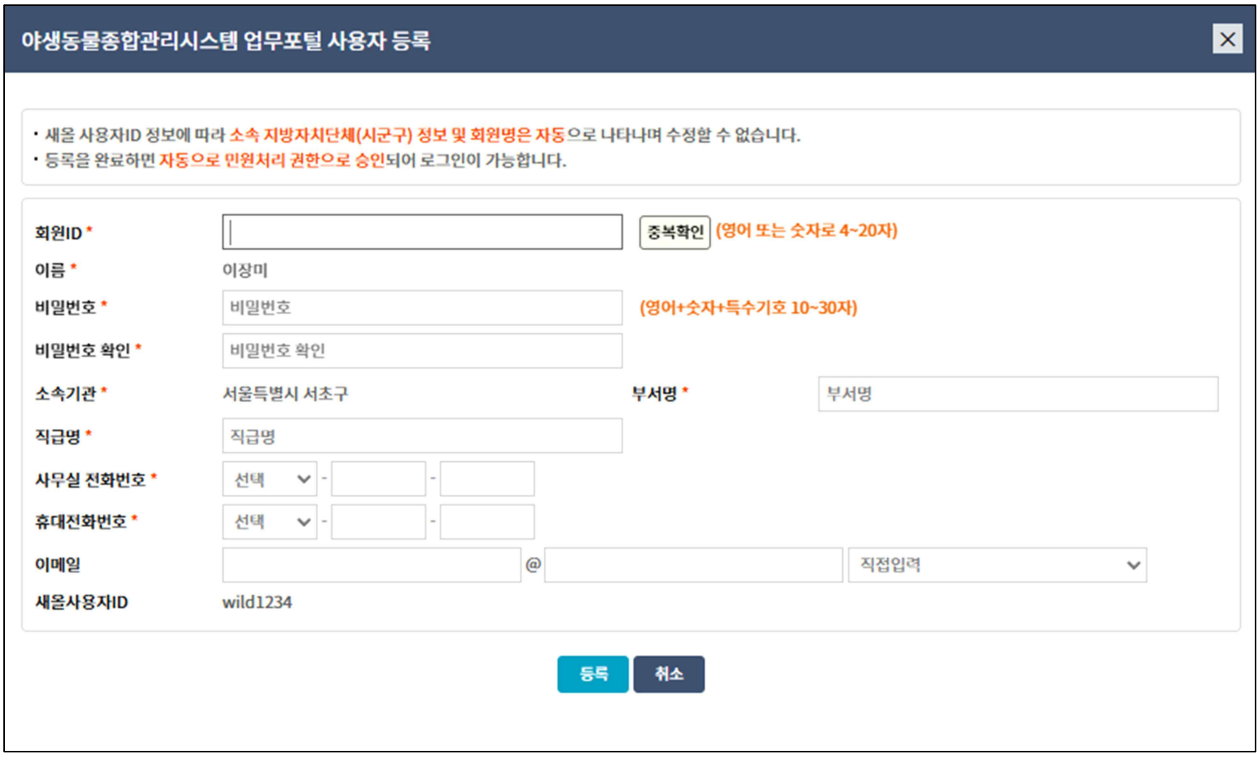




○ 휴대폰 본인인증 후 새올 사용자 조회

○ 조회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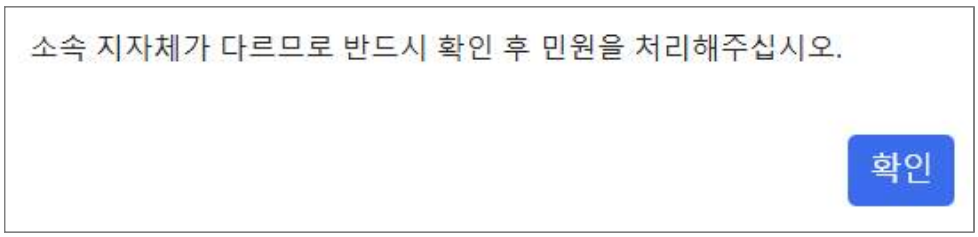
- 성공 시: '새올 사용자 ID가 성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기 회원 DB와 중복 시: '이미 등록된 새올 사용자 ID입니다.' ⇒ ID를 확인 후 다시 입력
- 실패 시: '새올 사용자 I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ID를 확인 후 다시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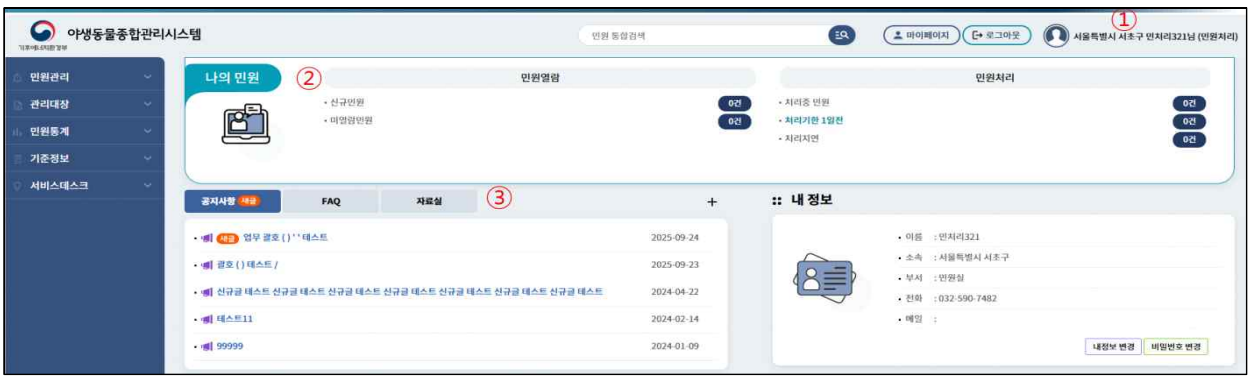


○ 새올 사용자 조회를 통해 수신된 지자체 정보, 사용자명은 자동 표시되고 수정 불가

○ 휴대폰 본인인증 성공 → 새올 사용자 조회 성공 → 회원 정보 등록 완료 시 자동으로 민원 처리 권한으로 승인

○ 로그인 시 아래와 같은 경고창이 뜨는 경우 소속 기관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한 후 내정보변경 화면에서 “새올 사용자 정보”를 업데이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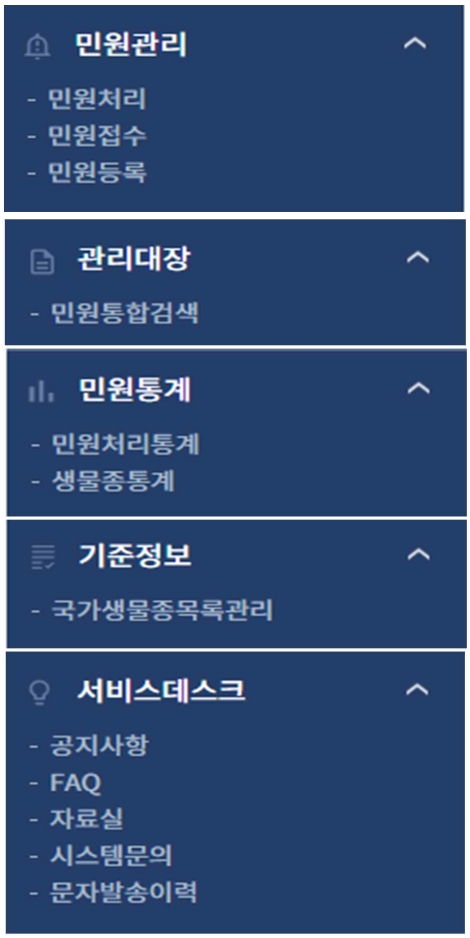


① 지자체 소속 표시

② 나의 민원(현황판)은 민원열람, 민원처리 건 수를 확인할 수 있음

③ 공지사항 등 게시판은 환경청, 지자체 공용 게시판으로 운영

○ 시스템 메뉴 안내



- 민원관리: 내 담당 민원 조회 가능

- 관리대장: 지자체 전체 민원 조회

- 민원통계: 지자체 전체 통계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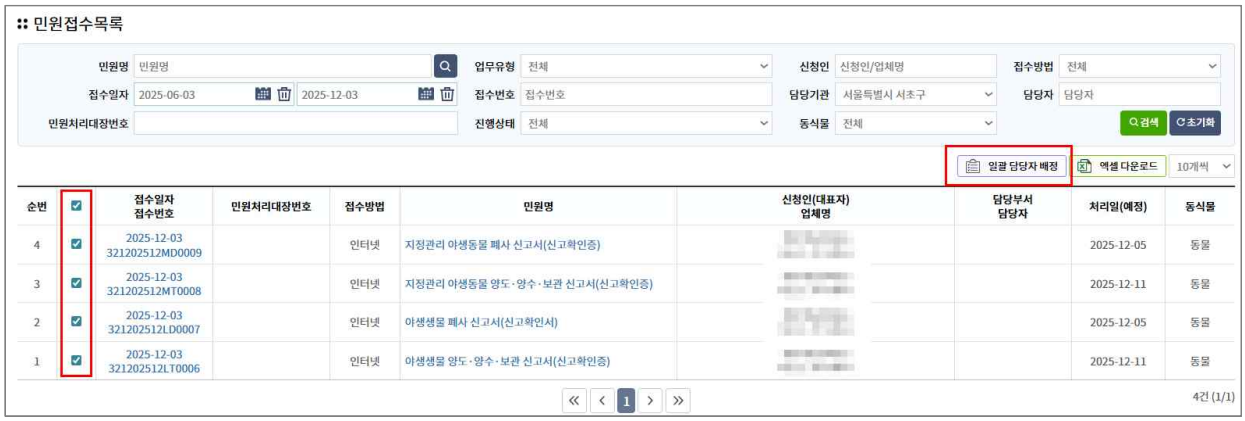
- 기준정보: 공통 자료

- 서비스데스크: 공용 게시판

나. 민원 처리 방법

1) 민원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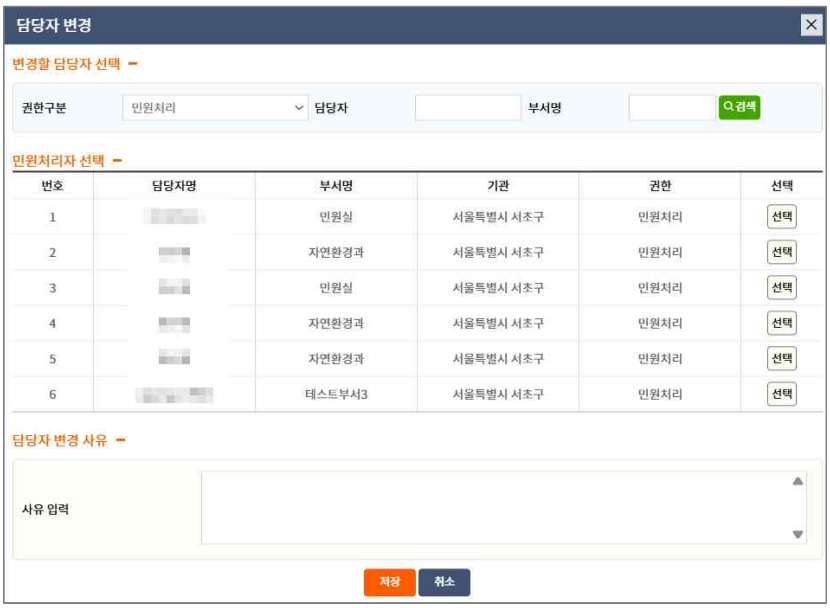
○ 민원관리 > 민원접수



○ 해당 민원 선택 후 [일괄 담당자 배정] 버튼을 클릭

- 민원 신청 후 모든 민원은 민원접수에서 조회되며, 민원별로 민원담당자를 배정하면 민원접수 화면에서 사라지고 민원처리로 이동

- 배정할 민원을 다중 체크한 후 [일괄 담당자 배정]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며, 팝업창에서 민원담당자 선택 가능



2) 민원처리

○ 민원관리 > 민원처리



① 민원명검색 기능

② 담당기관 검색 기능(소속 지자체만 확인 가능)

③ 민원처리대장번호: 새올행정시스템(행정정보공통이용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접수번호인 민원처리대장번호 검색

④ 진행상태 선택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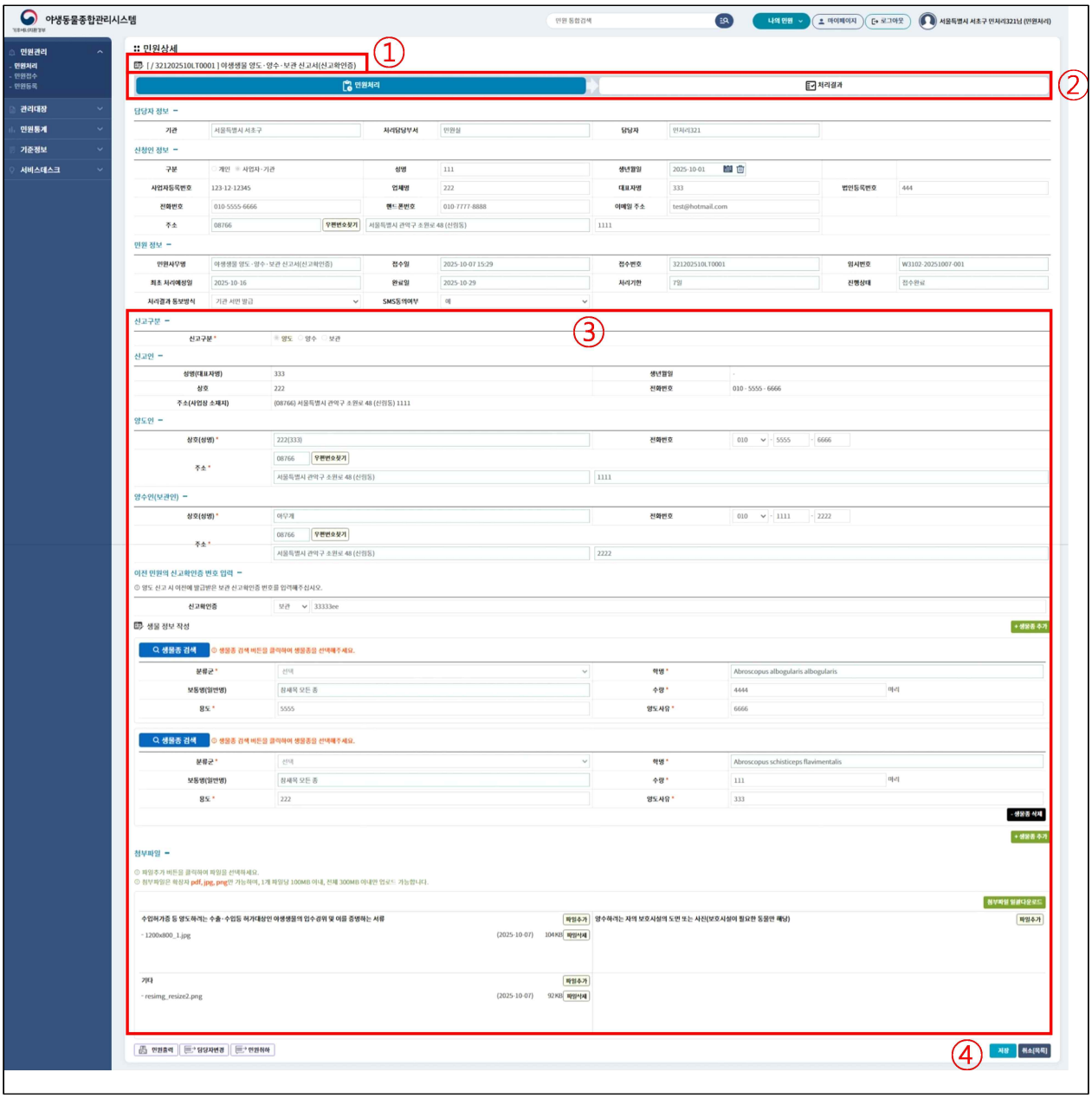
⑤ 처리하려는 민원의 '접수일자/접수번호' 및 '민원명'을 클릭하여 민원 상세페이지로 이동 가능

○ 검색결과



- 처리중 민원 탭에서는 신청·접수 후 처리완료 전 민원 건이 나타남
- 지연민원 탭에는 현재 처리예정일이 지났으나 처리완료가 되지 않은 민원이 나타남
- 처리완료민원 탭에서는 처리완료된 민원이 나타남
- 민원처리목록은 엑셀 다운로드 가능
- 일괄 담당자 변경 버튼을 통해 담당자를 변경 가능
- 민원처리대장번호는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접수번호
- [민원명]을 클릭하면 민원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

○ 민원관리 > 민원처리 > 민원상세 > 민원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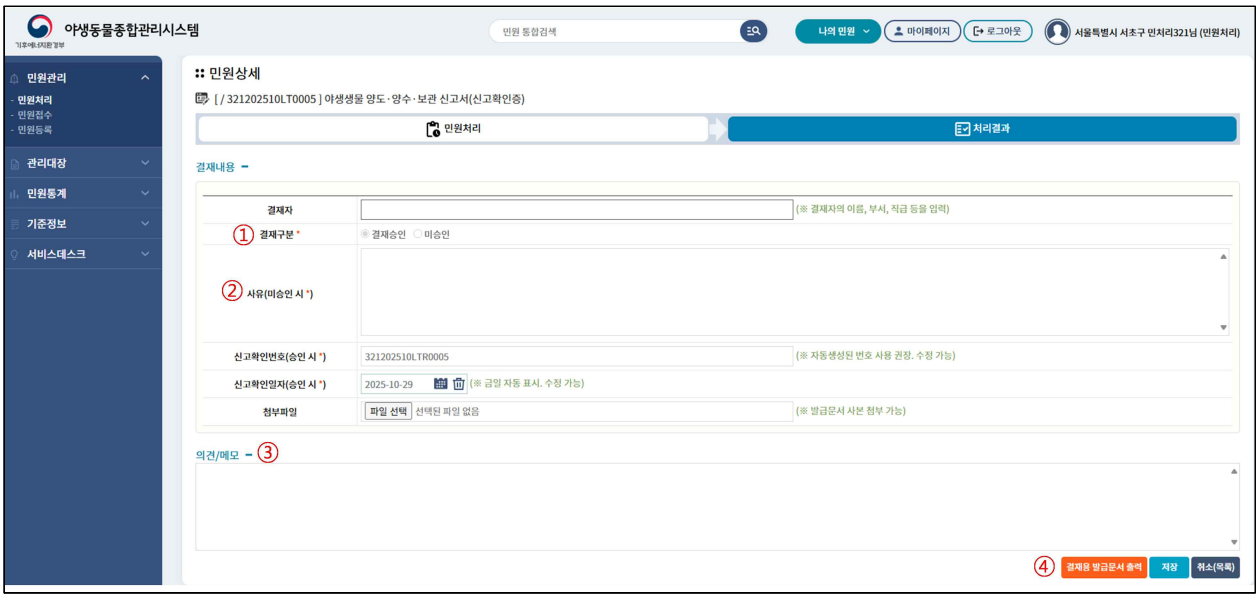
① 민원처리대장번호와 서식명(새올행정시스템의 접수번호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접수번호가 모두 표시됨)

② 민원처리와 처리결과

③ 민원정보(대민포털신청화면과 동일)

④ 민원정보 수정/보완 가능

○ 민원관리 > 민원처리 > 민원상세 > 처리결과



① 결재구분 필수 입력(**최초 저장 후 수정 불가**)

② 사유(미승인 시 사유 필수 입력)

결재승인 선택 시 신고확인번호, 신고확인일자 자동 표시되나 직접입력도 가능(저장 후 수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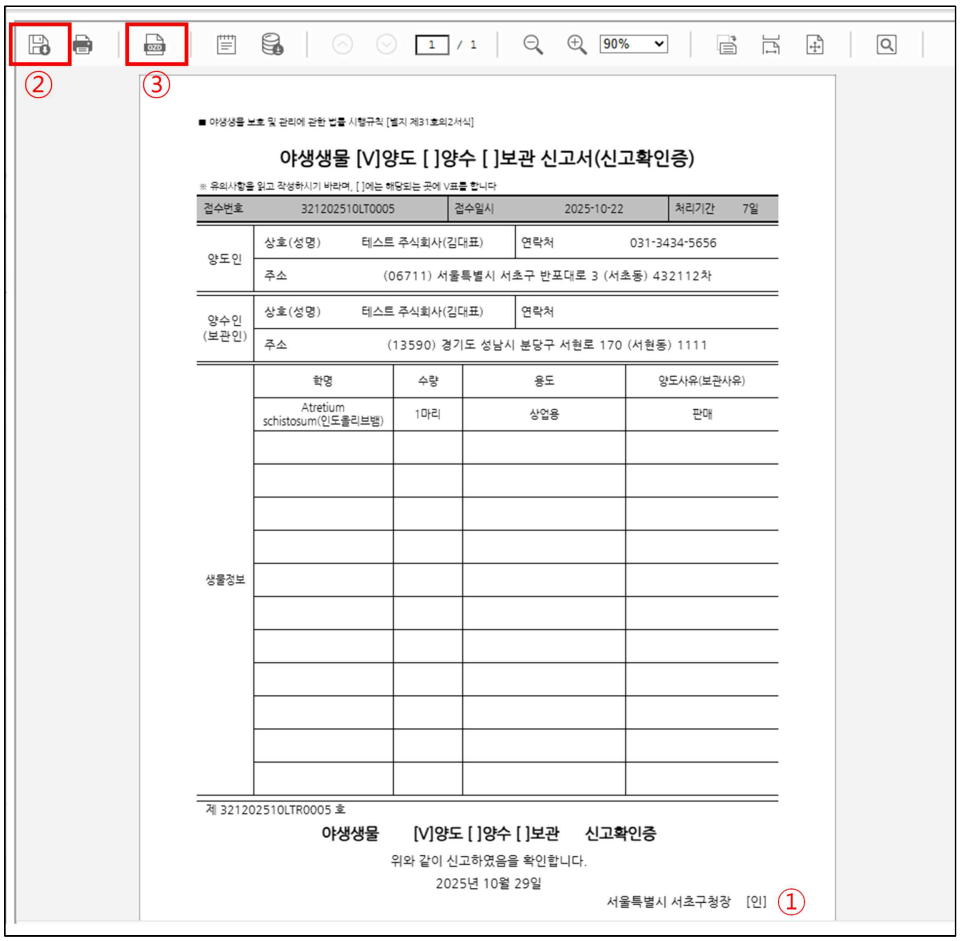
③ 의견/메모 입력 가능(저장 후 수정 가능)

④ 결재승인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결재용 발급문서 출력] 버튼이 나타나며, **저장 버튼 클릭 시마다 발급문서 pdf가 자동 재생성**됨(신고확인번호, 신고확인일자를 수정한 경우 pdf 재생성 가능)

※ **현재 시스템 내 결재 기능이 없으므로 지자체별 내부 결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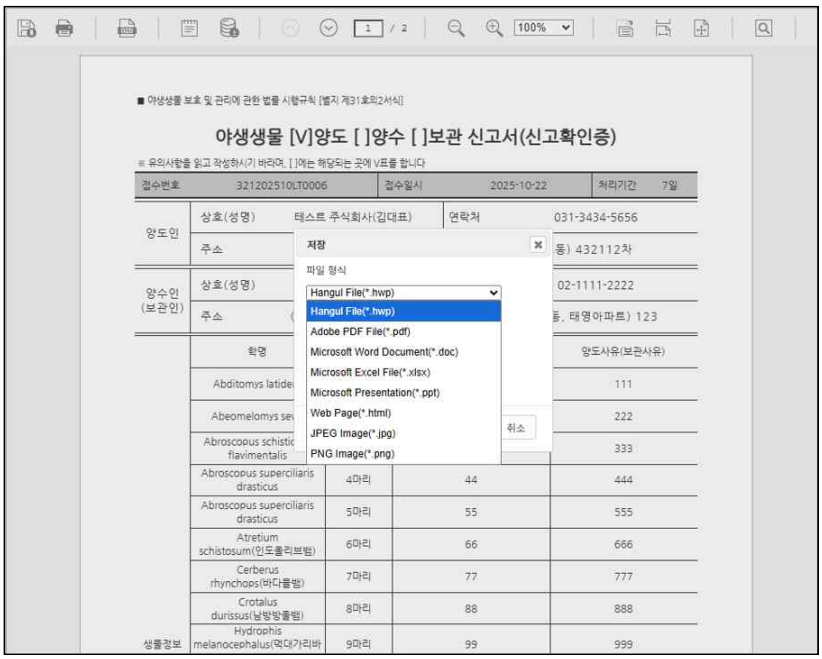
- '26.上 중 시스템 내 결재(관인 날인)기능을 포함하여 여타 미비사항에 대한 순차적 기능개선 예정
-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인·허가증 파일(pdf, hwp 형식 등)을 다운받아 별도 내부결재 등 진행 필요
- 승인·허가증을 hwp 파일로 다운로드 시 PC환경에 따라 편집이 깨질 수 있으니 유의

○ 민원관리 > 민원처리 > 민원상세 > 처리결과 > 결재용 발급문서 출력



① 출력 후,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직인을 추가하여 민원인에게 발송

② 선택한 형식으로 파일 저장(hwp 등)



다. 서면으로 접수한 민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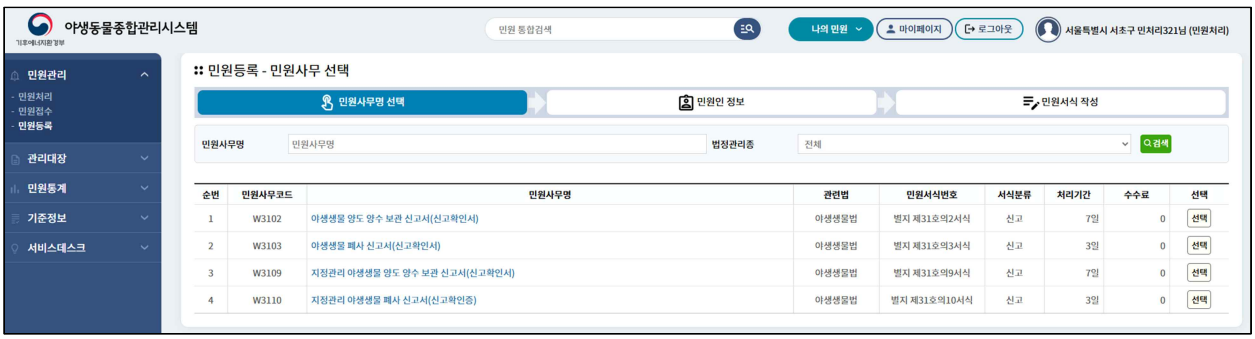
1) 민원등록

○ 민원관리 > 민원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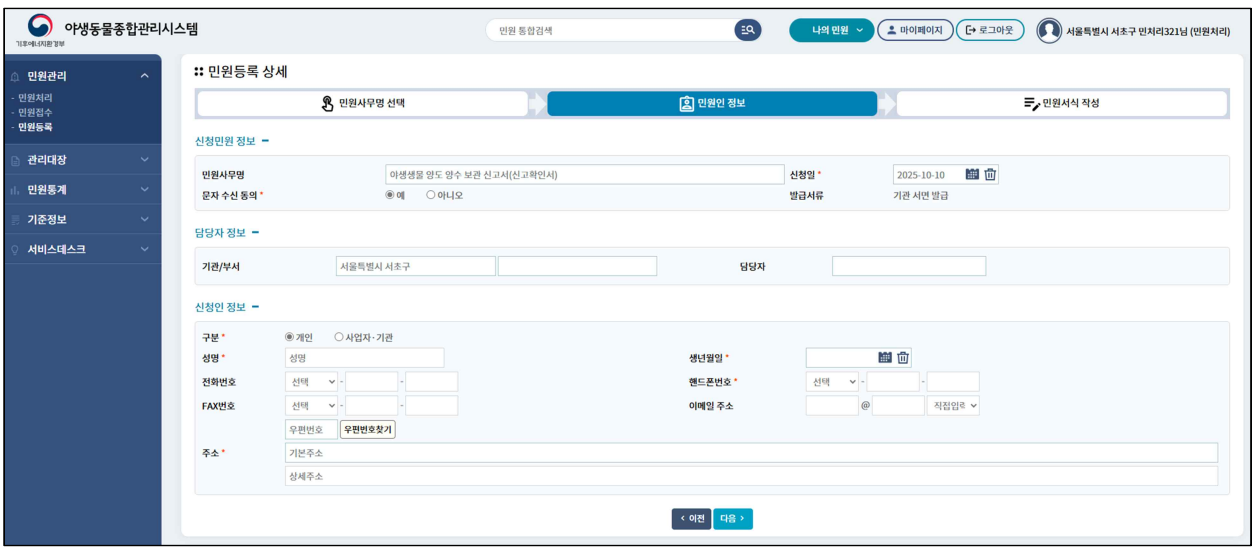


○ 민원관리 > 민원등록 > 민원 신규 등록

- 민원사무명 탭에서 민원 선택 또는 법정관리종을 검색한 후 검색결과에서 [선택]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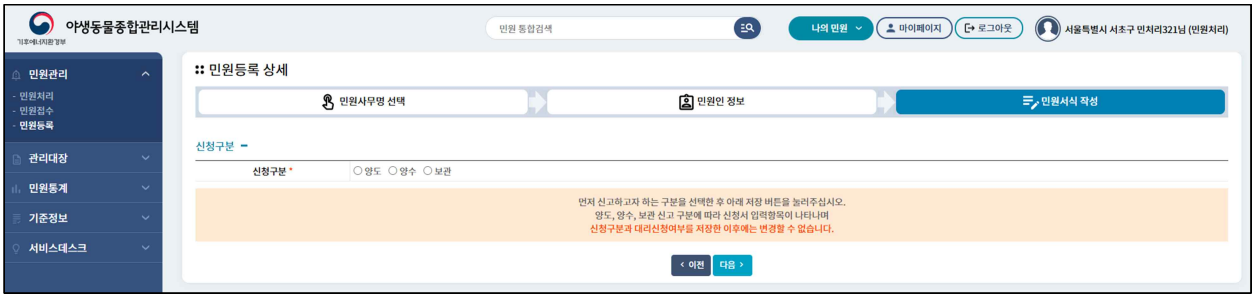
○ 민원관리 > 민원등록 > 민원 신규 등록 > 민원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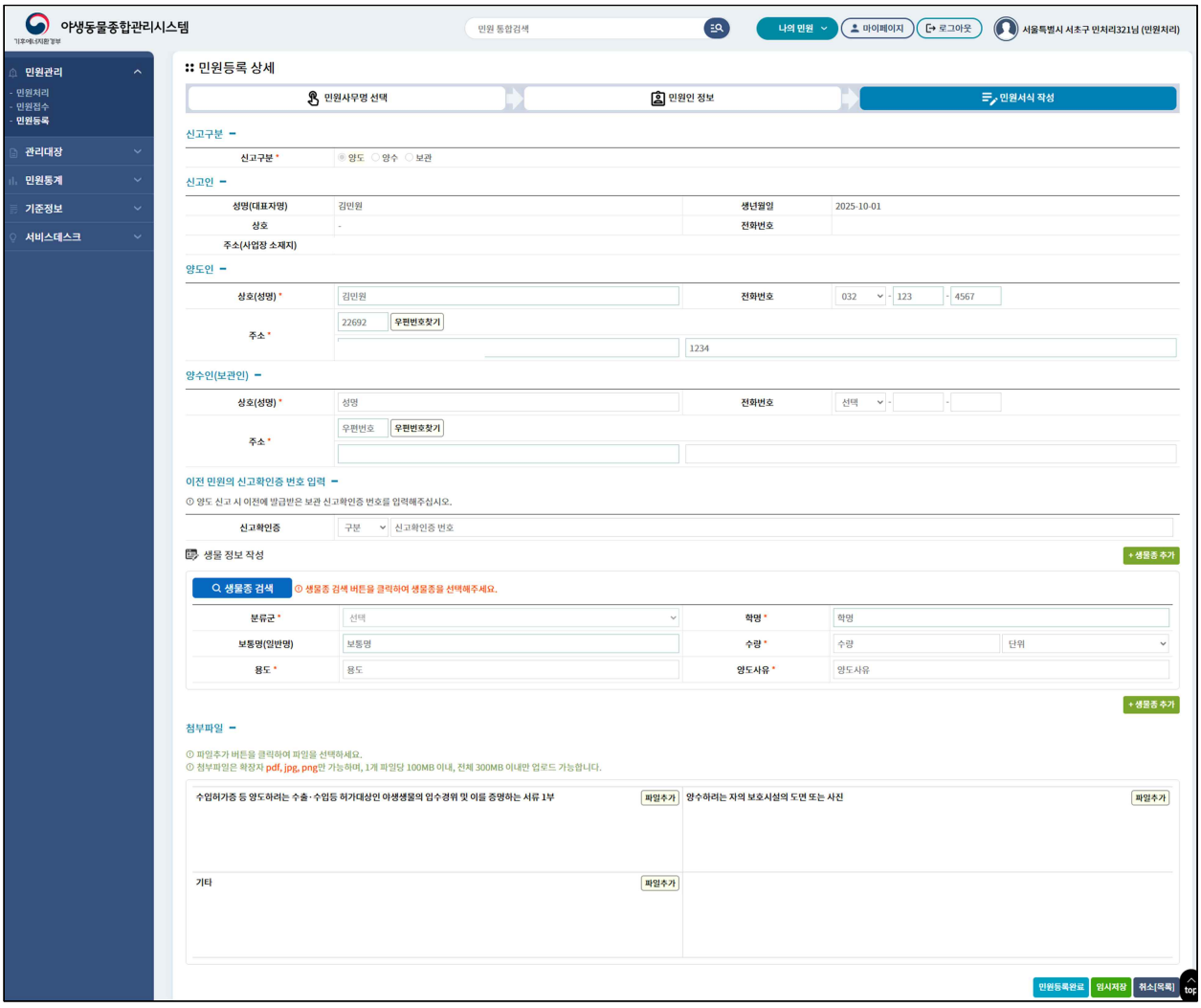
- 민원신청일은 수정할 수 있으며,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달력에서 선택 가능
- 문자 수신 동의 여부를 선택, “예”라고 동의하면 휴대폰 문자로 진행상황 수신
- 담당자 정보는 “민원접수” 메뉴 화면에서 민원 배정 시 자동으로 입력
- 신청인 구분에서 개인과 법인의 입력항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먼저 선택해야 함

*표시된 정보는 필수 입력 정보이므로, 반드시 입력

○ 민원관리 > 민원등록 > 민원 신규 등록 > 민원서식 작성(1)



○ 민원관리 > 민원등록 > 민원 신규 등록 > 민원서식 작성(2)



- 신청 항목에서 *은 필수입력항목
-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화면 하단의 [민원등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이 등록되며, 민원접수 화면에서 나타남
-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내용까지 임시 저장되며, "민원관리 > 민원등록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민원사무에 따라 신청 화면의 입력항목을 달라지므로, "대민포털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메뉴에서 각 민원의 "민원신청 작성방법 설명"을 참고

라. 시스템 추가 기능

1) 민원통합검색

○ 관리대장 > 민원통합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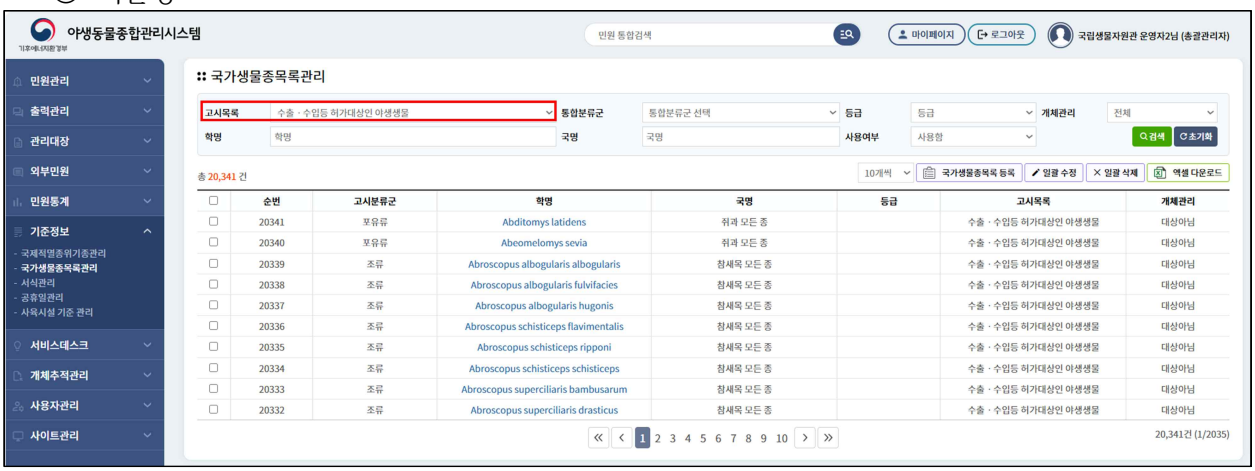


① 진행상태 검색조건: 처리중, 취하, 처리완료 중 선택

②, ③ 민원처리대장번호로도 검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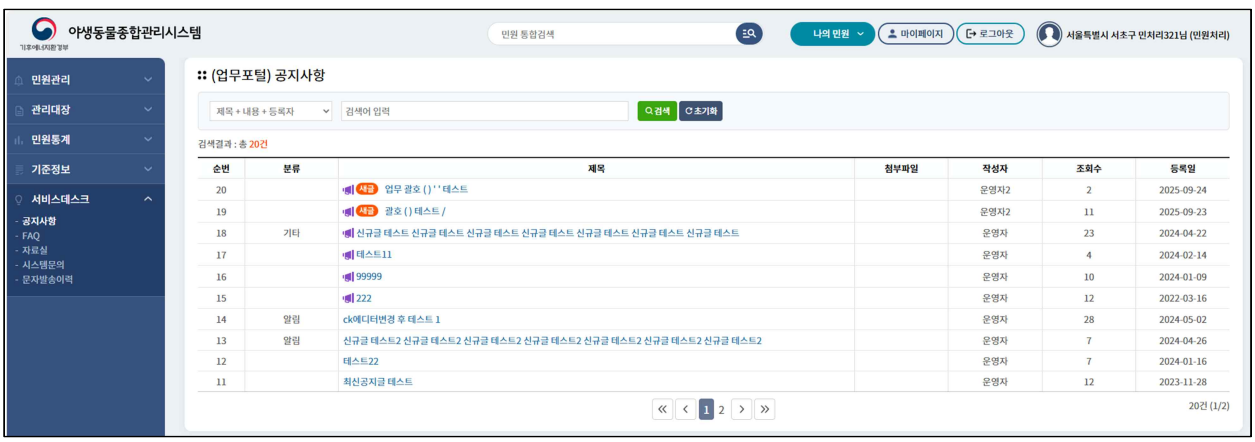
2) 고시목록별 종목록검색

○ 기준정보



3) 서비스데스크

○ 공지사항, FAQ, 자료실, 시스템문의, 문자발송이력 등 편의 제공



마. 민원 처리기한 연장 및 보완처리 방법

1) 민원 처리기한 연장

○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해당 법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예) 야생동물 양도, 양수, 보관 신고는 처리기간 7일 법정민원으로, 1회에 한해 7일까지 연장 가능(총 14일 처리기간 확보)

○ 현재 시스템상에 민원 처리기한 연장 기능이 도입되지 않아, 시스템 개선('26.上) 이전까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

⑴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 및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

※「행정절차법 」제29조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⑵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내 처리예정일을 연장된 처리기한으로 직접 수정

- 민원관리 메뉴 - 민원처리 메뉴 - 민원상세 화면에서 '처리예정일' 직접 수정

※ 처리예정일 수정 시, 민원인에게 SMS 자동 통보됨

2) 민원 보완처리 방법

○ 민원 서류 내용 및 첨부서류 미비 등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 및 보완자료 반영

○ 현재 시스템상에 민원 보완처리 기능이 도입되지 않아, 시스템 개선('26.上) 이전까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

⑴ 보완이 필요한 내용 및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보완요청

※「행정절차법 」제17조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⑵ 민원인에게 보완내용을 제출받아 보완하려는 민원상세 화면에서 내용 보완(신고서 및 첨부파일 수정 등)

※ 민원인은 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하므로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수정

⑶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내 처리예정일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가능)

- 민원관리 메뉴 - 민원처리 메뉴 - 민원상세 화면에서 '처리예정일' 직접 수정

※ 처리예정일 수정 시, 민원인에게 SMS 자동 통보됨

Ⅳ. 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관련 민원 처리

1. 영업허가

가. 법적 근거

○ 야생생물법 제22조의5, 시행규칙 제29조의7제1항

나. 허가 대상

○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중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야생생물법 제2조제3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법 제2조제4호 지정관리 야생동물,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8]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 아래의 영업허가 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박람회 등을 통한 야생동물의 이동식·일시적(10일 이내) 판매는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사육설비 크기 등)을 지키는 경우에 가능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취급 규모(시행령 제14조의4)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

○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합계)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두 종류 합산 기준으로) 50개체 이상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 (20개체 미만 보유하더라도) 월평균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합계)을 판매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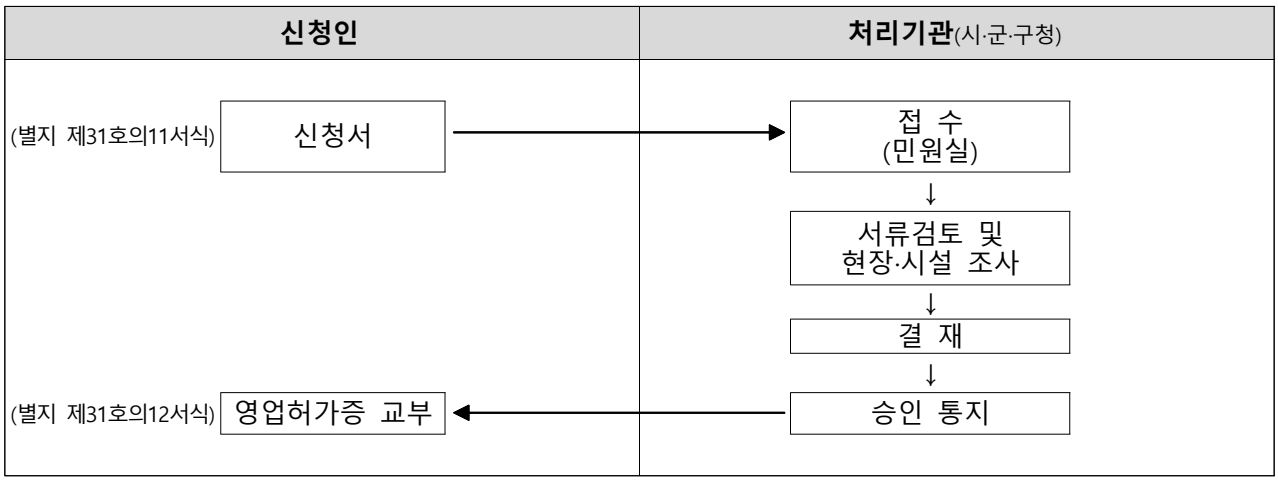
※ 다만, 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할 때는 (두 종류 합산 기준으로, 50개체 미만 보유하더라도)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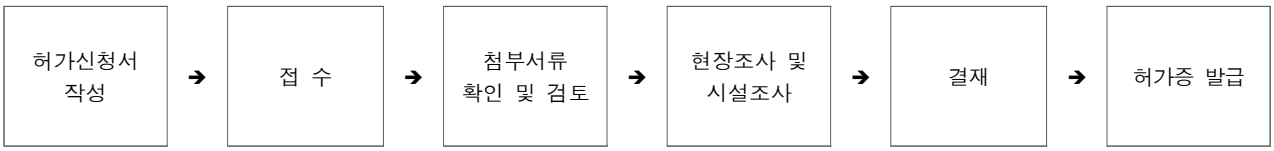
※ 무상 양도 개체수는 영업허가 규모(판매)에 미포함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합계)을 일시적으로 영업장 내에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두 종류 합산 기준으로)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

다. 허가 처리 절차





1) 접수: 민원인이 **야생동물 영업 허가 신청서(별지 제31호의11서식)**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합니다.

2) 처리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15일**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신청인 결격사유(야생생물법 제22조의6), 서류 요건, **시설 기준(시행규칙 별표 8의13)**을 모두 충족했는지 검토합니다(상세 내용은 아래 '마. 허가신청 서류 검토 요령' 참조).

신청인 결격사유(야생생물법 22조의6)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6. 제22조의9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결격사유 확인방법

1)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 수령(103쪽 예시 참고)

2)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내부 공문결재(조회대상, 조회내용 등 기재)

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조회

※ 근거법령 : 야생생물법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4) 단, 법 제22조의6제6호*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상 조회가 불가하므로, 타 지자체에 공문으로 확인 요청

* 야생생물법 제22조의6제6호 : 제22조의9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시설 기준(시행규칙 별표 8의13)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제29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 또는 층 등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과 다음의 시설은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이 표에서 "동물병원"이라 한다)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해당 건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된 축사의 부속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야생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돼야 하고, 야생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확인 및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바.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하여 외부 공간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거나 시설물을 구축해야 한다.

사. 사육설비(야생동물 영업장의 사육실, 격리실, 분만실 또는 판매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사육설비는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크기여야 한다.

가)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몸길이를 기준으로 각각 2배 및 1.5배 이상일 것. 다만, 꼬리가 전체 몸길이의 3분의 1 이상인 야생동물은 꼬리 길이를 제외한다.

나)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일 것

다) 가)에도 불구하고 사육설비가 원형인 경우 등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에 해당하는 크기에 준하는 크기(지름의 길이가 몸길이의 2배 이상인 크기 등을 말한다)일 것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뱀 아목인 경우에는 사육설비 둘레의 길이가 몸길이의 1.5배 이상일 것

2) 2단 이상 쌓는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돼야 한다.

4)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야생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5)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야생동물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6) 격리실은 다음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가)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가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

나) 격리실에 보호 중인 야생동물의 상태를 외부에서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구조를 취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 기준

가.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 사육실과 격리실을 설치해야 하고, 사육실과 격리실은 각각 분리[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는 제외한다)을 유리, 플라스틱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나. 야생동물 생산업

1) 사육실, 분만실(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키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격리실 및 판매실(야생동물을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설치해야 하고, 각각 분리하거나 별도로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며, 격리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해야 한다.

2)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 및 판매실은 건조가 쉽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야생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령 등에 따라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에서 야생동물 생산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를 위한 설비(소리를 내는 야생동물만 해당한다)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설비(냄새가 나는 야생동물만 해당한다)를 갖춰야 한다.

4) 사육실에는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선반 및 은신처 등을 말한다)을 조성해야 한다.

5)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류를 대상으로 하는 분만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1) 위탁관리실(소유주의 위탁을 받은 야생동물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고객응대실을 설치해야 하고,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각각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2) 위탁관리실은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하 이 목에서 “개별 휴식실”이라 한다)을 포함해야 한다.

3) 개별 휴식실은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의 영업장과 동물병원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 고객응대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현장 확인: 영업 예정지를 현장 방문하여 서류와 실제 시설이 일치하는지, **법정 시설 기준(시행규칙 [별표 8의13])**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야생동물 영업허가 시설 기준 현장 점검표’는 예시이며, 시설 기준에 따라 기재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수정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야생동물 영업허가 시설 기준 현장 점검표(판매업, 수입업)

점검일		점검자 소속		점검자	(서명)
		업체명		업체 담당자(직위)	(서명)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고 (부적합 또는 보완 시 조치 사항)
		적합	부적합	
일반기준	1. 시설의 독립성: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완전히 분리(벽, 층 등)되어 있는가? (동물병원, 농업경영체 예외)			
	2. 환경 설비: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며,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가?			
	3.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4. 안전 설비: 설치류·해충의 출입을 막는 설비와 소독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5. 소방시설이 법규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가?			
	6. 사육설비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가? - 가로와 세로: 동물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꼬리가 전체 몸길이 1/3 이상인 야생동물은 꼬리 길이 제외)(사육설비가 원 모양 등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름이 몸길이의 2배 이상 등 이에 준하는 크기) 높이: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 - 단, 뱀 아목의 경우 사육설비 둘레의 길이가 몸길이의 1.5배 이상			
	7.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8.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9.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었는가?			
	10. 야생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는가?			
	11.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야생동물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인가?			
	12. 격리실 설치 기준을 지켰는가? -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인가? - 격리실에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가? ※ 다만,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개별기준	**[판매업, 수입업]**			
	1. 시설 분리: 사육실과 격리실이 분리되어 있는가?			
검토 의견				

(예시) 야생동물 영업허가 시설 기준 현장 점검표(생산업)

점검일		점검자 소속		점검자	(서명)
		업체명		업체 담당자(직위)	(서명)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고 (부적합 또는 보완 시 조치 사항)
		적합	부적합	
일반기준	1. 시설의 독립성: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완전히 분리(벽, 층 등)되어 있는가? (동물병원, 농업경영체 예외)			
	2. 환경 설비: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며,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가?			
	3.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4. 안전 설비: 설치류·해충의 출입을 막는 설비와 소독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5. 소방시설이 법규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가?			
	6. 사육설비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가? - 가로와 세로: 동물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꼬리가 전체 몸길이 1/3 이상인 야생동물은 꼬리 길이 제외)(사육설비가 원 모양 등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름이 몸길이의 2배 이상 등 이에 준하는 크기) - 높이: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 - 단, 뱀 아목의 경우 사육설비 둘레의 길이가 몸길이의 1.5배 이상			
	7.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8.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9.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었는가?			
	10. 야생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는가?			
	11.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야생동물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인가?			
	12. 격리실 설치 기준을 지켰는가? -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인가? - 격리실에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가? ※ 다만,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개별기준	**[생산업]**			
	1. 시설 분리: 사육실, 분만실(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키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격리실 및 판매실(야생동물을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였으며, 분리하거나 구획되어 있는가?			
	2.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 및 판매실은 건조가 쉽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면서, 쉽게 부술 수 없는 것인가?			

	3. 건축법」 따른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체중 3킬로그램 미만인 소형 야생동물을 생산하는 경우 - (소리를 내는 야생동물의 경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 방지설비를 갖추었는가? - (냄새가 나는 야생동물의 경우) 악취방지설비를 갖추었는가?			
	4. 사육실에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선반 및 은신처 등을 말한다)을 조성하였는가?			
	5. 분만실 바닥이 망이 아닌 구조로 되었는가? ※ 단, 조류는 제외			
검토 의견				

(예시) 야생동물 영업허가 시설 기준 현장 점검표(위탁관리업)

점검일		점검자 소속		점검자	(서명)
		업체명		업체 담당자(직위)	(서명)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고 (부적합 또는 보완 시 조치 사항)
		적합	부적합	
일반기준	1. 시설의 독립성: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완전히 분리(벽, 층 등)되어 있는가? (동물병원, 농업경영체 예외)			
	2. 환경 설비: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며,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가?			
	3.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4. 안전 설비: 설치류·해충의 출입을 막는 설비와 소독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5. 소방시설이 법규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가?			
	6. 사육설비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가? - 가로와 세로: 동물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꼬리가 전체 몸길이 1/3 이상인 야생동물은 꼬리 길이 제외)(사육설비가 원 모양 등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름이 몸길이의 2배 이상 등 이에 준하는 크기) - 높이: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 - 단, 뱀 아목의 경우 사육설비 둘레의 길이가 몸길이의 1.5배 이상			
	7.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8.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9.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었는가?			
	10. 야생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는가?			
	11.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야생동물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인가?			
	12. 격리실 설치 기준을 지켰는가? -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인가? - 격리실에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가? ※ 다만,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개별기준	**[위탁관리업]**			
	1.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을 설치하였고 각각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는가? ※ 다만, 동물병원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 고객응대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2. 위탁관리실에 야생동물이 개별적으로 휴식 가능한 개별 휴식실이 있으며, 이 공간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가 있는가?			
검토 의견				

5) 처리: 제출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시 **허가증(별지 제31호의13서식)**을 발급합니다.

6) 기록·관리: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별지 제31호의14서식)**에 허가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7) 허가증 재발급: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별지 제31호의15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존 허가증을 첨부(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제외)하여 제출하면 접수하여 재발급합니다.

라. 허가 신청 서류 목록

영업허가(각 1부)
1. 신청서 2. 구비서류 가. 영업장 시설 명세 및 배치도 나. 인력 현황 다. 사업계획서 라. 시설 기준 증명서류(해당 시) 마. 법정 교육 이수증 바.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해당 시) 아. 개인정보 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 ※ 단, 외국인인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추가제출 필요 ①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②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③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마. 허가 신청 서류 검토 요령

1) 야생동물 영업 허가 신청서

○ 신청인 정보 누락 여부

○ 영업장 정보 누락 여부

- 야생동물 판매업.생산업 신청자 작성 항목:

• 학명: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과학 이름

• 국명: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

※ 예시: *Correlophus ciliatus*(학명), 속눈썹도마뱀부치(국명)

2) 영업장 시설 명세 및 배치도

○ 공통시설 기준 충족 여부

○ 업종별 개별 시설 기준 충족 여부

3) 인력 현황

○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이수증의 정보와 관리책임자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4) 사업계획서

○ 영업자 공통 준수사항 충족 여부

5) 시설 기준 증명 서류(해당 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 시)

○ 영업장 시설 내역 및 배치도로 확인할 수 없는 시행규칙 [별표 8의13]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시된 시설 기준 증명 서류 예시 외에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제출 가능

6) 법정 교육 이수증

○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 이수증(영업허가 이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 확인

※ 법정 교육은 상시 운영 예정(www.wildlife-edu.kr)

※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영업자 대신 교육 이수 가능

7)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 직접 제출

8)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 직접 제출

○ (참고) 건축물 용도별 가능업종

- **1종 근린생활시설**: 위탁관리업(300㎡ 미만)
- **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외), 판매시설**: 전 업종 가능(단, 생산업은 모든 개체가 3kg 미만일 경우에만)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전 업종 가능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전 업종 가능

※ (주의) 위 가능업종은 지자체 담당자 참고 사항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 개별 건축물과 소재지 특성,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군·구 건축과 등 담당자 최종검토 필요(지식산업센터 등)

※ (참고)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표시변경 시, 야생동물 영업허가 시설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세부용도로 기재 권고(예: 제2종근린생활시설(야생동물 판매시설) 등)되나, 기존 운영되던 영업장의 경우 건축물 용도를 만족하는 경우 세부용도와 무관하게 영업허가 가능

9) 개인정보 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

○ 영업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수령

야생동물 영업허가 서류 점검표

번호	점검 서류
1	신청서
2	영업장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인력 현황
4	사업계획서
5	시설 기준 증명서류(해당 시)
6	법정 교수 이수증(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이수)
7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8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해당 시)
9	개인정보 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

바. 허가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생산·판매한 경우

3)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 신고 없이 야생동물을 양도·양수한 경우
○ 야생동물 영업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수입·반입·수출·반출·양도·양수·인공증식·보관·폐사·방사한 경우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7) 허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1서식]

야생동물 영업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영업 종류	[ ]야생동물 판매업 [ ]야생동물 수입업 [ ]야생동물 생산업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 다수 영업의 허가 신청 시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	
취급 대상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인력 현황(종사자 수)	명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 신청인 작성항목

종별 보유 현황 (보유 예정 야생동물 포함) ※ 사육 종별로 모두 작성하며,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학명 및 국명		수량
	학명	국명	총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야생동물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제6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5서식]

야생동물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 ]위탁관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영업 종류	[ ]야생동물 판매업 [ ]야생동물 수입업 [ ]야생동물 생산업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허가증 분실사유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 ]위탁관리업의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해당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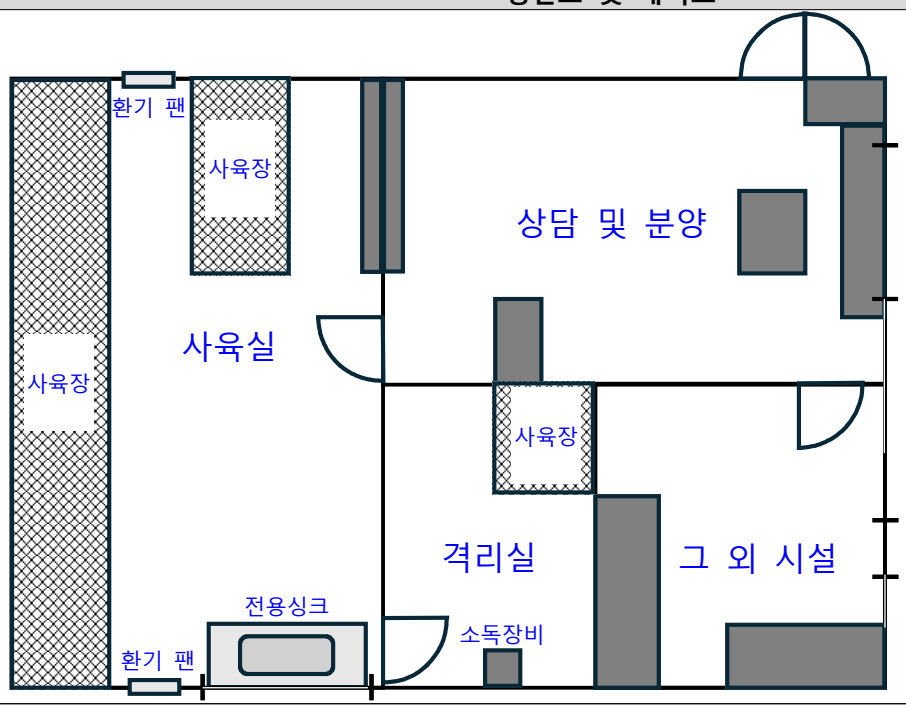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영업장 시설 명세 및 배치도(예시)

명칭(상호)	온나라겍코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999번지		
업종	[√] 야생동물 판매업 [ ] 야생동물 수입업 [ ] 야생동물 생산업 [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대표자	ㅇㅇㅇ	**연락처**	전화번호: 0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0

공통 시설 기준			
채광 및 환기 잘 되는지 여부	여 [√] 부 [ ]	온습도 조절 시설	유 [√] 무 [ ]
급수 및 배수시설	유 [√] 무 [ ]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로 설비 여부	여 [√] 부 [ ]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 방제 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유 [√] 무 [ ]	소독약과 소독장비	유 [√] 무 [ ]
야생동물 판매업 개별 기준			
사육실과 격리실 분리 설치 여부	여 [√] 부 [ ]	사육설비 적정 설치 여부	여 [√] 부 [ ]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유 [√] 무 [ ]	격리실 적정 설치 여부	여 [√] 부 [ ]

평면도 및 배치도



총면적	50㎡
사육실	20㎡
격리실	5㎡
상담 및 분양	15㎡
그 외 시설	10㎡

영업장 인력 현황(예시)

명칭(상호)	온나라겍코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999번지		
업종	[√] 야생동물 판매업 [ ] 야생동물 수입업 [ ] 야생동물 생산업 [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대표자	ㅇㅇㅇ	연락처	전화번호: 0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0

[인력 총 현황] 총 명			
번호	구분	이름	직무
1	대표자 **(관리책임자)**	ㅇㅇㅇ	- 영업 총괄 및 직원 교육 - 고객 상담 및 분양
2	매니저	ㅇㅇㅇ	- 사육 및 건강 관리 - 사육장 및 격리실 관리
3	사원	ㅇㅇㅇ	- 시설 및 재고 관리
	-이하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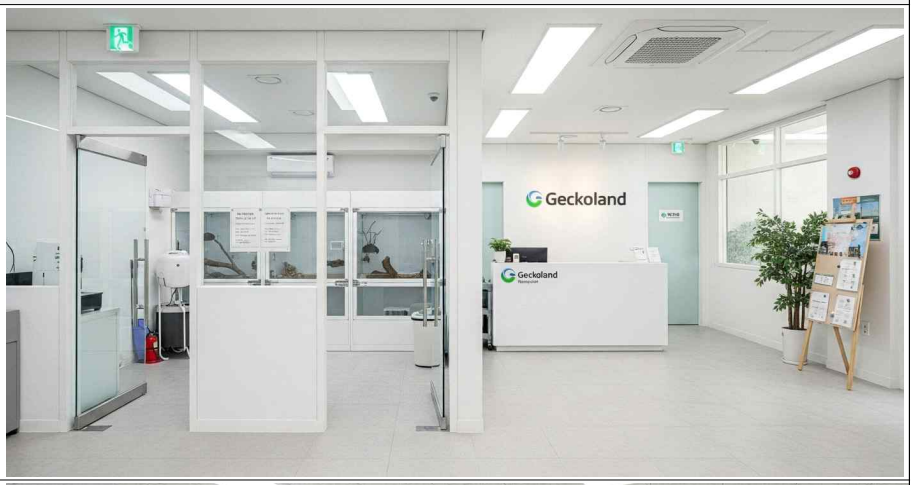
※ 관리책임자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 대표자 본인도 영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 업 계 획 서 (예 시)

대 표 자	홍길동	연 락 처	010-0000-0000
상 호	○○○○		
업 종	[√] 야생동물 판매업 [ ] 야생동물 수입업 [ ] 야생동물 생산업 [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영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규 모	1층 50㎡		
개 업 일	20○○년 ○○월 ○○일		
영업시간	10:00 - 19:00		
휴 무 일	매주 화요일		
영업내용	- 주요 품목: 소형 및 중형 반려 조류 분양 - 부가 서비스: 조류 사육용품 판매, 반려인 교육 및 상담 등		
사업 세부 계획	1. 주요시설 및 장비 설치 계획 -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바닥은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로 설치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고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설비 -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 설치하며,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 적용 - 사육설비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 - 사육설비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갖춤 2. 영업장 관리 계획 - 위생 관리: 매일 사육장 및 케이지 청소, 소독. 정기적인 방역으로 질병 예방 - 사육 환경: 조류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온습도 유지, 충분한 환기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건강 관리: 분양 전 건강 검진 실시, 질병 발생 시 즉시 격리 및 치료. 협력 동물병원 통한 신속한 조치 3. 분양 및 고객관리 계획 - 분양절차: 고객상담-사전교육-건강검진-분양 4. 인력 운영 계획 - 종사자: 5명(조류 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 확보) - 관리 책임자: ○○○ ※ 상기계획은 예시이며, 업종별로 영업 시설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 작성 필요		

시설 기준 증명서류(예시)

업종	위탁관리업	동물 분류	파충류
구분	사진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 분리			
개별 휴식실 및 사료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			

제 2025-000호

교육이수증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2000.1.1.
교육시간 : 3시간

위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야생동물 보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23일

국립생물자원관장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예시)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안내

○○ 기관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관련 근거 :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성명	**준영구**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야생동물 영업허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고유식별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번호 등	**준영구**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 (동의 거부권리 안내) **주민등록번호**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9의2호에 따라 수집·이용 합니다. 그 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야생동물 영업허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목록)

상호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위 동의서의 제출자 (성명) (서명, 날인)

○○ 기관장 귀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3서식]

허가번호 제 호

야생동물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 ]위탁관리업 허가증

영업장 상호(명칭)		
영업장 주소		
허가 받은 자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영업 종류	※ 야생동물 생산업의 경우 생산 동물을 함께 표시합니다.	
비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 ]위탁관리업의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4서식]

야생동물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 ]위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

1. 영업 허가 사항

영업장 상호(명칭)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영업 종류	[ ]야생동물 판매업 [ ]야생동물 수입업 [ ]야생동물 생산업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허가번호			허가일	년 월 일
허가받은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영업장 현황

공통 기재사항	취급 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포함 여부		여 / 부	종사자 수	명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	시설면적	사육실	㎡	분만실	㎡
		격리실	㎡	판매실	㎡
	건물 소유 여부		[ ]소유 [ ]임대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시설면적	위탁관리실	㎡	고객응대실	㎡
	건물 소유 여부		[ ]소유 [ ]임대		

3. 영업 허가의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4. 그 밖의 행정조치 사항

조치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5. 행정처분 사항

행정 처분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행정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성명)

6. 비고	

2. 영업자 점검

▸ 제도 시행('25.12.14) 후 1년(~'26.12.13)은 현장 계도기간으로 계도 중심으로 지도 점검 시행(고의적인 법 위반 등 필요 시 처분 가능)

가.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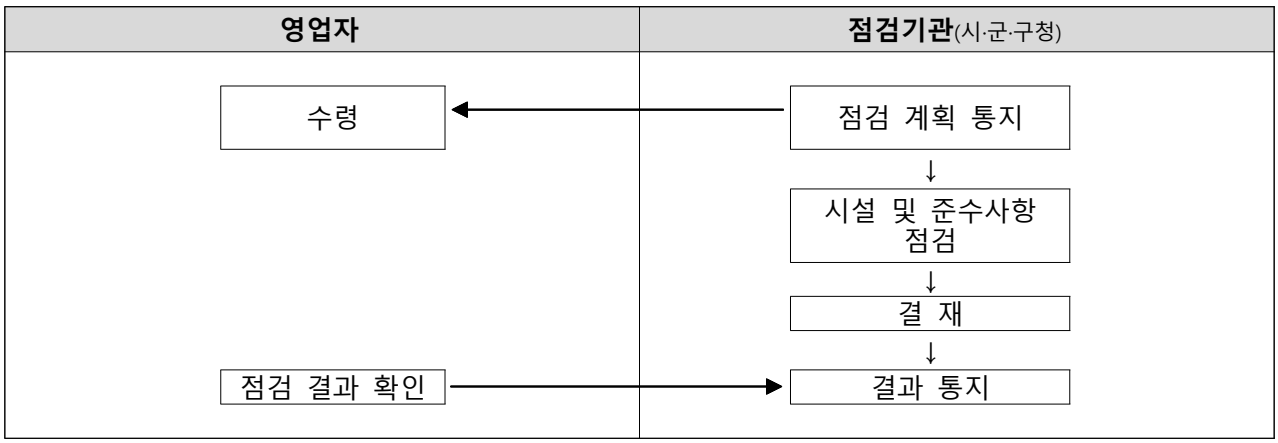
◯ 야생생물법 제22조의11제1항, 시행령 제14조의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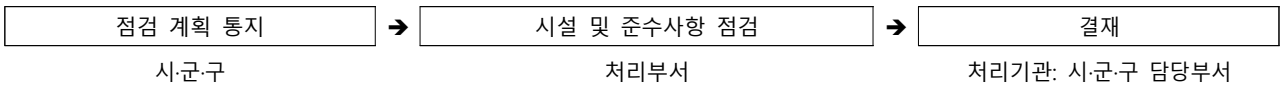
나. 점검 주기

◯ 정기 점검 1회/년 이상

◯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

다. 점검 절차





시·군·구 처리부서 처리기관: 시·군·구 담당부서

1) 점검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점검 계획 통지

※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 착수 때 통지

◯ 점검 목적

◯ 점검 기간 및 장소

◯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 점검 범위 및 내용

◯ 제출 자료 목록

2) 영업장이 허가 시 시설을 유지하는지, **시설 기준(시행규칙 [별표 8의13])**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야생동물 영업허가 시설 기준 현장 점검표'는 예시이며, 시설 기준에 따라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수정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야생동물 영업허가 시설 기준 현장 점검표(판매업, 수입업)

점검일		점검자 소속		점검자	(서명)
		업체명		업체 담당자(직위)	(서명)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고 (부적합 또는 보완 시 조치 사항)
		적합	부적합	
일반기준	1. 시설의 독립성: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완전히 분리(벽, 층 등)되어 있는가? (동물병원, 농업경영체 예외)			
	2. 환경 설비: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며,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가?			
	3.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4. 안전 설비: 설치류·해충의 출입을 막는 설비와 소독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5. 소방시설이 법규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가?			
	6. 사육설비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가? - 가로와 세로: 동물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꼬리가 전체 몸길이 1/3 이상인 야생동물은 꼬리 길이 제외)(사육설비가 원 모양 등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름이 몸길이의 2배 이상 등 이에 준하는 크기) 높이: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 - 단, 뱀 아목의 경우 사육설비 둘레의 길이가 몸길이의 1.5배 이상			
	7.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8.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9.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었는가?			
	10. 야생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는가?			
	11.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야생동물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인가?			
	12. 격리실 설치 기준을 지켰는가? -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인가? - 격리실에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가? ※ 다만,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개별기준	**[판매업, 수입업]**			
	1. 시설 분리: 사육실과 격리실이 분리되어 있는가?			
검토 의견				

(예시) 야생동물 영업허가 시설 기준 현장 점검표(생산업)

점검일		점검자 소속		점검자	(서명)
		업체명		업체 담당자(직위)	(서명)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고 (부적합 또는 보완 시 조치 사항)
		적합	부적합	
일반기준	1. 시설의 독립성: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완전히 분리(벽, 층 등)되어 있는가? (동물병원, 농업경영체 예외)			
	2. 환경 설비: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며,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가?			
	3.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4. 안전 설비: 설치류·해충의 출입을 막는 설비와 소독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5. 소방시설이 법규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가?			
	6. 사육설비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가? - 가로와 세로: 동물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꼬리가 전체 몸길이 1/3 이상인 야생동물은 꼬리 길이 제외)(사육설비가 원 모양 등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름이 몸길이의 2배 이상 등 이에 준하는 크기) - 높이: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 - 단, 뱀 아목의 경우 사육설비 둘레의 길이가 몸길이의 1.5배 이상			
	7.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8.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9.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었는가?			
	10. 야생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는가?			
	11.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야생동물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인가?			
	12. 격리실 설치 기준을 지켰는가? -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인가? - 격리실에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가? ※ 다만,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개별기준	**[생산업]**			
	1. 시설 분리: 사육실, 분만실(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키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격리실 및 판매실(야생동물을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였으며, 분리하거나 구획되어 있는가?			
	2.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 및 판매실은 건조가 쉽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면서, 쉽게 부술 수 없는 것인가?			

	3. 건축법」 따른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체중 3킬로그램 미만인 소형 야생동물을 생산하는 경우 - (소리를 내는 야생동물의 경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 방지설비를 갖추었는가? - (냄새가 나는 야생동물의 경우) 악취방지설비를 갖추었는가?			
	4. 사육실에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선반 및 은신처 등을 말한다)을 조성하였는가?			
	5. 분만실 바닥이 망이 아닌 구조로 되었는가? ※ 단, 조류는 제외			
검토 의견				

(예시) 야생동물 영업허가 시설 기준 현장 점검표(위탁관리업)

점검일		점검자 소속		점검자	(서명)
		업체명		업체 담당자(직위)	(서명)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고 (부적합 또는 보완 시 조치 사항)
		적합	부적합	
일반기준	1. 시설의 독립성: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완전히 분리(벽, 층 등)되어 있는가? (동물병원, 농업경영체 예외)			
	2. 환경 설비: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며,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가?			
	3.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4. 안전 설비: 설치류·해충의 출입을 막는 설비와 소독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5. 소방시설이 법규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가?			
	6. 사육설비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가? - 가로와 세로: 동물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꼬리가 전체 몸길이 1/3 이상인 야생동물은 꼬리 길이 제외)(사육설비가 원 모양 등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름이 몸길이의 2배 이상 등 이에 준하는 크기) - 높이: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 - 단, 뱀 아목의 경우 사육설비 둘레의 길이가 몸길이의 1.5배 이상			
	7.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8.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9.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었는가?			
	10. 야생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는가?			
	11.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야생동물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인가?			
	12. 격리실 설치 기준을 지켰는가? -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인가? - 격리실에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가? ※ 다만,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개별기준	**[위탁관리업]**			
	1.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을 설치하였고 각각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는가? ※ 다만, 동물병원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 고객응대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2. 위탁관리실에 야생동물이 개별적으로 휴식 가능한 개별 휴식실이 있으며, 이 공간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가 있는가?			
검토 의견				

3) 영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8의14])**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야생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표'를 활용하여 누락하는 항목이 없도록 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8의14)

야생동물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제29조의9 관련)

1. 공통사항

가. 야생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하며, 영업장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한다.

나.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 공격성이 있는 야생동물, 늙은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고 있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야생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라.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별지 제31호의17서식의 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이하 이 표에서 "개체관리카드"라 한다)에 각각의 야생동물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종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마. 별표 8의13 제1호사목에 따른 사육설비에 개체별 정보(품종, 출생일 등을 말한다)를 표시해야 한다.

바. 야생동물 판매업자, 야생동물 수입업자 및 야생동물 생산업자는 야생동물의 구입·수입·인공증식·판매 명세를 기록한 거래명세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 야생동물 영업자는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29조의11에 따른 교육을 영업 허가를 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영업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영업장이 한 곳이더라도 해당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목에 따른 각 영업장별 관리책임자가 해당 영업자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아.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목에 따른 교육이수의무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29조의11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을 사목에 따른 교육과 별도로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자.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영업장별로 관리책임자 1명을 선임해야 하며, 야생동물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그 영업자는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

차.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유무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카.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타.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파. 야생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해야 한다.

하. 야생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해야 한다.

거. 야생동물 판매업자, 야생동물 수입업자 및 야생동물 생산업자는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해당 야생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야생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야생동물 안락사 처리 내용,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너.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더. 영업장 내부에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러. 다른 사람의 영업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개별사항

가. 야생동물 판매업

1) 판매되는 야생동물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 등에 특화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 운송업체를 통하여 전달해야 한다.
2)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을 판매해야 한다.
3)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자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4) 해당 야생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 방법을 구매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야생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에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 야생동물 판매업의 허가번호, 상호(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야생동물의 출생일과 야생동물 판매업자가 해당 야생동물을 구입한 날
   다) 야생동물 판매업자가 해당 야생동물을 구입한 구입처의 상호(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야생동물의 종류(품종을 포함한다), 색상 및 그 밖의 특징
   마) 판매 시 야생동물의 건강상태
   바) 판매일 및 판매금액
6) 5)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야생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1. 계약내용

판매금액	금 원 정 (₩)	판매일	년 월 일

2. 야생동물의 기본정보

종류(품종)		성별	암 / 수
출생일			
판매업자가 구입한 날		구입처 정보	※ 상호(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색상		그 밖의 특징	

3. 야생동물의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현재 상태	[ ]양호 [ ]이상 [ ]치료 필요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 내용	비고
세부 기록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판매인)	주소				서명 날인
	영업 허가번호				
	전화번호		상호(성명)		

매수인	주소				서명 날인
	전화번호		상호(성명)		

7)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상호(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8) 별지 제31호의18서식의 야생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야생동물 수입업

1) 야생동물 수입업자는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 별지 제31호의18서식의 야생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야생동물 수입업자가 야생동물을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야생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 야생동물 생산업

1) 개체관리카드에 야생동물의 출생일, 출산 개체 수 등 야생동물의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2) 별지 제31호의18서식의 야생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야생동물 생산업자가 야생동물을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야생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1)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야생동물의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는 야생동물을 소유주로부터 위탁받을 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의 허가번호, 상호(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야생동물의 종류(품종을 포함한다), 나이, 색상 및 그 밖의 특이사항
   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라) 야생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
   마)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야생동물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3) 야생동물을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는 동안에는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상주하고 있거나 해당 야생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야생동물 영업자(판매업) 준수사항 점검표(예시)

구분	점검 항목	검토 결과		비고 (부적합 또는 보완 시 조치 사항)
		적합	부적합	
공통사항	1. 야생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하고 있으며, 영업장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고 있는가?			
	2.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 공격성이 있는 야생동물, 늙은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야생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4. 야생동물 영업자는 각각의 야생동물에 대해 별지 제31호의17서식의 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 작성하여 보관하는가? 사육설비에 개체별 정보(품종, 출생일 등) 표시하였는가? ※ 필요한 경우, 종별로 개체관리카드 작성 가능			
	5. 판매업자, 수입업자 및 생산업자는 구입·수입·인공증식·판매 명세를 기록한 거래명세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6.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을 받았는가? (교육이수증 이수일 확인) ※ 허가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7.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영업장별로 관리책임자 1명을 선임하였는가? ※ 영업장에 영업자가 상주하는 경우 영업자 본인도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음			
	8.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야생동물에 대해서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9. 야생동물에게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단,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10. 야생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하고 있는가?			
	11. 야생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하였는가?			
	12. 야생동물 판매업자, 수입업자 및 생산업자의 경우,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회복될 수 없거나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 안락사 처리 내용,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13.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14. 영업장 내부에 영업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하였는가? ※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 게시			
	15. 다른 사람의 영업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개별사항	**[판매업]**			
	1. 야생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 등에 특화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 운송업체 통해 전달하였는가?			
	2.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을 판매하는가?			
	3.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자 확인서를 지참한 상태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는가?			
	4. 야생동물 판매 시 해당 야생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을 구입자에게 알려주는가?			
	5. 야생동물 판매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하고,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 포함)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가? -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번호, 상호(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야생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구입한 날 - 야생동물 판매업자가 야생동물을 구입한 구입처의 상호(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야생동물의 종류(품종), 색상 및 그 밖의 특징 - 판매 시의 건강상태 - 판매일 및 판매금액			
	6.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허가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는가?			
	7. 별지 제31호의18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가?			
검토 의견				

야생동물 영업자(수입업) 준수사항 점검표(예시)

구분	점검 항목	검토 결과		비고 (부적합 또는 보완 시 조치 사항)
		적합	부적합	
공통사항	1. 야생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하고 있으며, 영업장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고 있는가?			
	2.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 공격성이 있는 야생동물, 늙은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야생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4. 야생동물 영업자는 각각의 야생동물에 대해 별지 제31호의17서식의 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 작성하여 보관하는가? 사육설비에 개체별 정보(품종, 출생일 등) 표시하였는가? ※ 필요한 경우, 종별로 개체관리카드 작성 가능			
	5. 판매업자, 수입업자 및 생산업자는 구입·수입·인공증식·판매 명세를 기록한 거래명세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6.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을 받았는가? (교육이수증 이수일 확인) ※ 허가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7.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영업장별로 관리책임자 1명을 선임하였는가? ※ 영업장에 영업자가 상주하는 경우 영업자 본인도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음			
	8.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야생동물에 대해서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9. 야생동물에게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단,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10. 야생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하고 있는가?			
	11. 야생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하였는가?			
	12. 야생동물 판매업자, 수입업자 및 생산업자의 경우,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회복될 수 없거나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 안락사 처리 내용,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13.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14. 영업장 내부에 영업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하였는가? ※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 게시			
	15. 다른 사람의 영업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개별사항	[수입업]			
	1.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2. 별지 제31호의18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가?			
	3. 야생동물을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가?			
검토 의견				

야생동물 영업자(생산업) 준수사항 점검표(예시)

구분	점검 항목	검토 결과		비고 (부적합 또는 보완 시 조치 사항)
		적합	부적합	
공통사항	1. 야생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하고 있으며, 영업장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고 있는가?			
	2.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 공격성이 있는 야생동물, 늙은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야생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4. 야생동물 영업자는 각각의 야생동물에 대해 별지 제31호의17서식의 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 작성하여 보관하는가? 사육설비에 개체별 정보(품종, 출생일 등) 표시하였는가? ※ 필요한 경우, 종별로 개체관리카드 작성 가능			
	5. 판매업자, 수입업자 및 생산업자는 구입·수입·인공증식·판매 명세를 기록한 거래명세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6.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을 받았는가? (교육이수증 이수일 확인) ※ 허가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7.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영업장별로 관리책임자 1명을 선임하였는가? ※ 영업장에 영업자가 상주하는 경우 영업자 본인도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음			
	8.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야생동물에 대해서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9. 야생동물에게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단,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10. 야생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하고 있는가?			
	11. 야생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하였는가?			
	12. 야생동물 판매업자, 수입업자 및 생산업자의 경우,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회복될 수 없거나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 안락사 처리 내용,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13.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14. 영업장 내부에 영업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하였는가? ※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 게시			
	15. 다른 사람의 영업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개별사항	[생산업]			
	1. 개체관리카드에 야생동물의 출생일, 출산 개체 수 등 야생동물의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2. 별지 제31호의18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가?			
	3. 야생동물을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가?			
검토 의견				

야생동물 영업자(위탁관리업) 준수사항 점검표(예시)

구분	점검 항목	검토 결과		비고 (부적합 또는 보완 시 조치 사항)
		적합	부적합	
공통사항	1. 야생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하고 있으며, 영업장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고 있는가?			
	2.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 공격성이 있는 야생동물, 늙은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야생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4. 야생동물 영업자는 각각의 야생동물에 대해 별지 제31호의17서식의 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 작성하여 보관하는가? 사육설비에 개체별 정보(품종, 출생일 등) 표시하였는가? ※ 필요한 경우, 종별로 개체관리카드 작성 가능			
	5.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을 받았는가? (교육이수증 이수일 확인) ※ 허가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6.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영업장별로 관리책임자 1명을 선임하였는가? ※ 영업장에 영업자가 상주하는 경우 영업자 본인도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음			
	7.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야생동물에 대해서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8. 야생동물에게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단,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9. 야생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하고 있는가?			
	10. 야생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하였는가?			
	11. 야생동물 판매업자, 수입업자 및 생산업자의 경우,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회복될 수 없거나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 안락사 처리 내용,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12.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13. 영업장 내부에 영업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하였는가? ※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 게시			
	14. 다른 사람의 영업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개별사항	**[위탁관리업]**			
	1.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야생동물의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2.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 소유주에게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가? - 영업 허가번호, 상호(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의 종류(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을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3. 야생동물을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는 동안에는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상주하고 있거나 해당 야생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검토 의견				

라. 점검 후 조치

○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7서식]

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table>
<tr><td rowspan="4">사업장 정보</td><td>영업장 상호(명칭)</td><td colspan="2"></td><td>대표자 성명</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허가번호 (허가일)</td><td></td><td>영업 종류</td><td colspan="3">[ ]야생동물 판매업 [ ]야생동물 수입업
[ ]야생동물 생산업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td></tr>
<tr><td>취급 대상 야생동물</td><td colspan="5">[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td></tr>
<tr><td rowspan="11">판매업·수입업·생산업</td><td rowspan="11">개체정보 (종별정보)</td><td colspan="2">학명</td><td>국명</td><td colspan="2">수량</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8">위탁관리업</td><td>위탁자 성명</td><td>위탁자 전화번호</td><td colspan="2">위탁내용</td><td>위탁기간</td><td>비고</td></tr>
<tr><td></td><td></td><td colspan="2">[ ] 사육 [ ] 보호</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 ] 사육 [ ] 보호</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 ] 사육 [ ] 보호</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 ] 사육 [ ] 보호</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 ] 사육 [ ] 보호</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 ] 사육 [ ] 보호</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 ] 사육 [ ] 보호</td><td>~</td><td></td></tr>
<tr><td>특이사항</td><td colspan="6">※ 건강상태(질병, 이상 유무 등) 등 특이사항 기록</td></tr>
</table>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8서식]

야생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1. 영업 허가 사항

영업장 상호 (명칭)				
허가번호		허가일	년 월 일	
영업 종류	[ ]야생동물 판매업 [ ]야생동물 수입업 [ ]야생동물 생산업	영업 내용		
주소	(전화번호:)		종사자 수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2. 영업장 현황

야생동물 판매업	사육실	㎡	격리실	㎡
	건물 소유 여부	[ ]자가 [ ]임대	취급 대상의 종류	[ ] 포유류 [ ] 조류 [ ] 파충류 [ ] 양서류
야생동물 수입업	사육실	㎡	격리실	㎡
	건물 소유 여부	[ ]자가 [ ]임대	취급 대상의 종류	[ ] 포유류 [ ] 조류 [ ] 파충류 [ ] 양서류
야생동물 생산업	사육실	㎡	분만실	㎡
	격리실	㎡	판매실	㎡
	건물 소유 여부	[ ]자가 [ ]임대	취급 대상의 종류	[ ] 포유류 [ ] 조류 [ ] 파충류 [ ] 양서류

3. 영업 실적

구분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분류군	학명	판매 수량	분류군	학명	수입국	판매 수량	인공증식 현황			판매 수량
								분류군	학명	수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4. 비고

3. 허가 사항 변경

가. 법적 근거

○ 야생생물법 제22조의5, 시행규칙 제29조의7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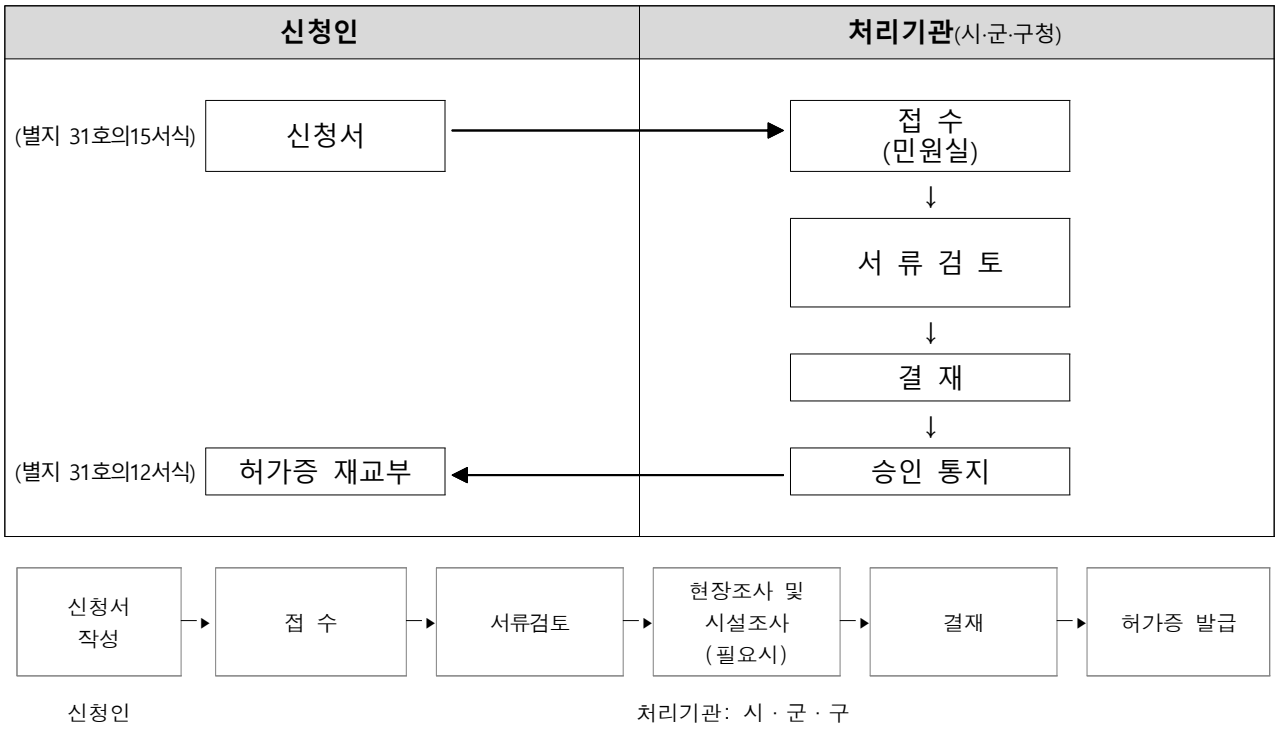
나. 변경 대상

○ 영업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 허가 처리 절차



1) 접수: 민원인이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1호의12서식)**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합니다.

2) 처리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7일**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검토합니다(상세 내용은 아래 '마. 허가 신청 서류 검토 요령' 참조).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의 결격사유(야생생물법 제22조의6), 영업자 교육이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현장 확인: 필요 시 영업장을 방문하여 변경된 업종의 시설 기준과 일치하는지, 영업자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5) 처리: 심사 후 허가 시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별지 제31호의14서식)**에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허가증(별지 제31호의13서식)**을 재교부합니다.

6) 기록·관리: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별지 제31호의14서식)**에 허가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라. 허가 신청 서류 목록

허가사항 변경(각 1부)
1. 신청서 2. 구비서류 가. 허가증 나.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라.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해당 시)

마. 허가 신청 서류 검토 요령

1) 변경허가 신청서

○ 신청인 성명, 영업장 명칭, 영업 종류 정보 누락 여부

○ 변경 사항 정보 누락 여부

○ 변경 사유 확인

2) 허가증

○ 업종 확인

○ 영업장 명칭 확인

○ 소재지 확인

○ 대표자(법인) 확인

○ 영업 종류 확인

○ 비고 확인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변경 사항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의 영업허가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영업 종류 확인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의 결격사유(야생생물법 제22조의6), 영업자 교육이수증을 확인 (영업허가 83쪽 참고)

※ 업종별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 충족하는지 확인(영업허가 83쪽 참고)

4)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 직접 제출

5)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 직접 제출

야생동물 영업 변경 허가 신청 처리 서류 점검표

번호	점검 서류
1	신청서
2	허가증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5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해당 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2서식]

야생동물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 ]위탁관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영업장	상호(명칭)	허가번호	
변경사유	[ ]법인 대표자의 변경 [ ]야생동물 영업장의 주소 변경 [ ]야생동물 영업의 종류 변경		
변경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 ]위탁관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3서식]

허가번호 제 호

야생동물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 ]위탁관리업 허가증

영업장 상호(명칭)		
영업장 주소		
허가 받은 자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영업 종류	※ 야생동물 생산업의 경우 생산 동물을 함께 표시합니다.	
비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 ]위탁관리업의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4서식]

야생동물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 ]위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

1. 영업 허가 사항

영업장 상호(명칭)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영업 종류	[ ]야생동물 판매업 [ ]야생동물 수입업 [ ]야생동물 생산업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허가번호			허가일	년 월 일
허가받은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영업장 현황

공통 기재사항	취급 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포함 여부		여 / 부	종사자 수	명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	시설면적	사육실	㎡	분만실	㎡
		격리실	㎡	판매실	㎡
	건물 소유 여부		[ ]소유 [ ]임대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시설면적	위탁관리실	㎡	고객응대실	㎡
	건물 소유 여부		[ ]소유 [ ]임대		

3. 영업 허가의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4. 그 밖의 행정조치 사항

조치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5. 행정처분 사항

행정 처분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행정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성명)

6. 비고	

4. 지위승계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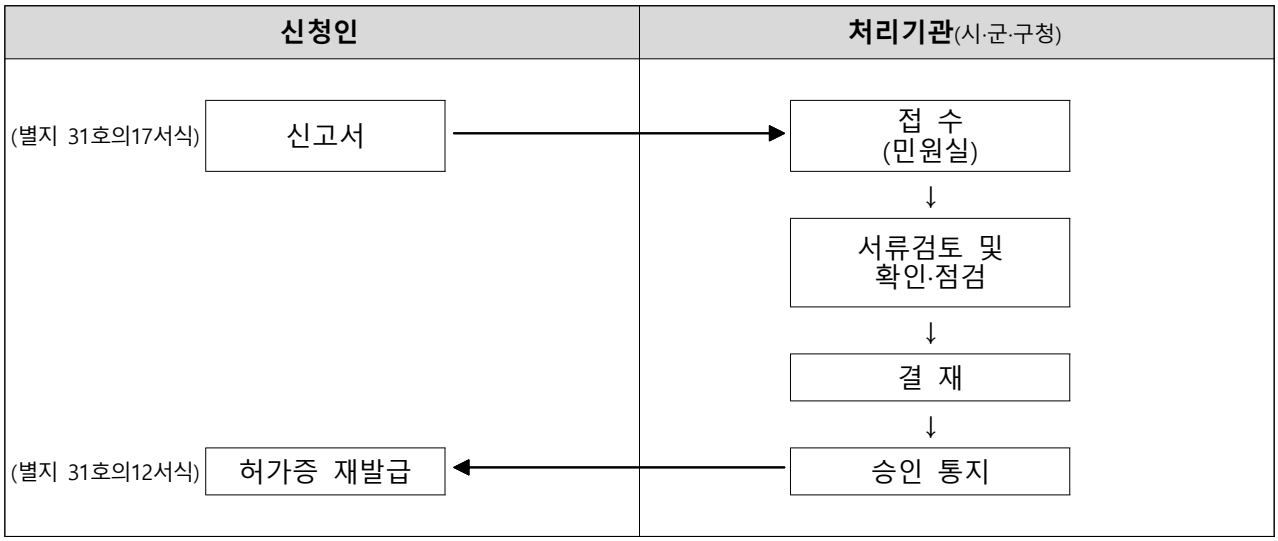
가.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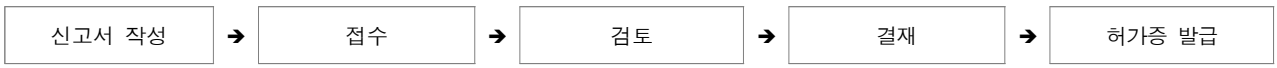
○ 야생생물법 제22조의7, 시행규칙 제29조의8

나. 신고 대상

○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하려는 자

다. 신고 처리 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1) 접수: 민원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31호의16서식)**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합니다.

2) 처리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3일**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검토합니다(상세 내용은 아래 '마. 신고 서류 검토 요령' 참조).

4) 처리: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 시 **허가증(별지 제31호의13서식)**을 재발급합니다.

라. 신고 신청 서류 목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각 1부)
양도·양수 시
1. 신고서 2. 구비서류 가. 양도·양수 증명 서류 나. 양도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해당 시) 마. 신원확인 자료(영업허가 결격사유 확인 필요 시)
상속 시
1. 신고서 2. 구비서류 가. 상속 사실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해당 시) 다. 신원확인 자료(영업허가 결격사유 확인 필요 시)
양도·양수 및 상속 외 사유
1. 신고서 2. 구비서류 가. 영업자 지위 승계 증명 서류 나. (법인 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다. 신원확인 자료(영업허가 결격사유 확인 필요 시)

마. 신고 서류 검토 요령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승계를 하는 사람 정보 누락 여부

○ 승계를 받는 사람 정보 누락 여부

○ 영업장 정보 누락 여부

○ 승계 사유 확인

○ 사유 정보 확인

2) 양도·양수 증명 서류(양도·양수 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증명 서류 확인

3) 양도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양수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동법 같은 법 제7조제7항) 확인

※ 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4) 상속 증명 서류(상속 시)

○ 상속 사실 증명 서류 확인(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5) 영업자 지위승계 증명 서류(양도·양수 및 상속 외 사유)

○ 법원 경매, 파산 재산 처분, 세금 체납 등 해당 사유에 따른 증명 서류 확인

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관련 서류

○ 지위승계 사유별 필요 서류를「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 필요 서류

- 양도·양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상속: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법인 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신원확인 자료(영업허가 결격사유 확인 필요 시)

○ 영업허가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폐업 시 야생동물 처리 등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휴업·폐업 관련 조치사항 137쪽 참고)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처리 점검표

번호	점검 서류
양도·양수 시	
1	신고서
2	양도·양수 증명 서류
3	양도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5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해당 시)
6	신원확인 자료(영업허가 결격사유 확인 필요 시)
상속시	
1	신고서
2	상속 사실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해당 시)
4	신원확인 자료(영업허가 결격사유 확인 필요 시)
양도·양수 및 상속 외 사유	
1	신고서
2	영업자 지위 승계 증명 서류
3	(법인 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4	신원확인 자료(영업허가 결격사유 확인 필요 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6서식]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상호 (명칭)	승계 전	승계 후
	주소		
	영업 종류	[ ]야생동물 판매업 [ ]야생동물 수입업 [ ]야생동물 생산업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허가번호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합병 [ ]그 밖의 사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양도·양수의 경우	상속의 경우	양도·양수 또는 상속 외의 경우	수수료
첨부 서류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 사유별로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합니다)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승계를 하는 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장의 영업 종류란은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중 해당되는 업종란에 √ 표시를 하고, 여러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5. 휴업·폐업 관련 조치 사항

가. 법적 근거

○ 야생생물법 제22조의5, 시행규칙 제29조의7

나. 대상

○ 야생동물 영업자가 휴업, 폐업 하려는 경우

다. 필요한 조치

○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

-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기증 또는 분양 등) 등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이행 계획을 이행한 후 이행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 위탁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야생동물 영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조치 결과를 통보할 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반납해야 함

라. 지자체 확인 사항

○ 야생동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

○

V. 위반 시 처분사항

1. 벌칙

※ 야생생물법 제69조 ~ 제71조

위반 사항	처분	근거 법률(야생생물법)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의 무허가 수출·반출 또는 수입·반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0조제8호
허가받지 않은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제70조제8호의2
허가받지 않은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보관		제70조제8호의3
무허가 야생동물 영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69조제1항제8호
무허가 야생동물 영업자가 보관 중인 야생동물	몰수	제71조제3항

2. 과태료

※ 야생생물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위반 사항	처분	근거 법률(야생생물법)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양도·양수·보관·폐사 미신고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제73조제3항제7호의2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미신고 위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반출 미신고		제73조제3항제7호의3
백색목록 또는 허가받은 지정관리 야생생물 양도·양수·보관·폐사 미신고		제73조제3항제7호의4
야생동물 영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시, 보관 야생동물 필요 조치 미이행		제73조제3항제7호의5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 승계 미신고		제73조제3항제7호의6
야생동물 영업자의 허가 취소 시, 보관 야생동물 필요 조치 미이행		제73조제3항제7호의7
야생동물 영업 점검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	제73조제3항제7호의8
개정법률 시행일('25.12.14) 이전에 기르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미신고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4항

3. 행정처분

※ 야생생물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별표12]

가. 일반기준

○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이 서로 다르면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적용. 다만, 여러 위반이 모두 영업정지나 면허정지라면, 각 처분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간의 절반(1/2)까지 가산하여 처분할 수 있음

○ 위반 횟수(2차, 3차 등)에 따라 처분이 무거워지는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 이때 1년의 기간은, 과거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아래의 감경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한 내용·정도가 경미하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식물 등에 미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이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 5년 이상 생물자원 보전시설 또는 박제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거나 수렵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고의나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경우,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 기간을 계산할 때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계산

○ 폐쇄명령은 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된 곳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종류별로 사육하고 있는 개별 시설에 한정하여 적용

나.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경고	허가취소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경고	허가취소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경고	허가취소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경고	허가취소		
야생동물 영업 허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취소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허가취소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허가취소			
영업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취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양도·양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수입·반입·수출·반출·양도·양수·인공증식·보관·폐사·방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경고	허가취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4.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 야생생물법 제22조의10, 시행령 제14조의5 [별표1의4]

○ 야생동물 영업자가 아래의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이 야생동물 질병의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야생동물 학대 행위 등
-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 미신고
- 야생동물 영업허가 기준 미달 발생
-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 승계 미신고
- 야생동물 영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 야생동물법을 위반한 포획·수입·반입·수출·반출·양도·양수·인공증식·보관·폐사·방사
- 야생동물 영업 미개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부당 명의 사용 또는 야생생물 영업허가증 대여

○ 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 부과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영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 × 영업정지 일수 × 0.1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영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해당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위반행위 내용,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내지 않아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징수

부록 1. 별지 서식 목록

한눈에 찾아보는 야생동물 민원 서식 및 법적 근거

대상	행위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서식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별지 제29호서식]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
			제29조제2항	[별지 제30호서식]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
				[별지 제31호서식]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 발급 대장
	양도·양수·보관 신고	제21조제3항	제29조의2 제1항	[별지 제31호의2서식]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
	폐사 신고	제21조제3항	제29조의2 제2항	[별지 제31호의3서식]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외)	수입·반입 허가	제22조의2 제2항	제29조의4 제1항	[별지 제31호의4서식]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신청서
			제29조의4 제3항	[별지 제31호의5]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증
				[별지 제31호의6서식]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증 발급대장
백색목록	수입·반입 신고	제22조의2 제3항	제29조의5 제1항	[별지 제31호의7서식] 백색목록 수입·반입 신고서(신고확인증)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반출 신고	제22조의2 제4항	제29조의5 제2항	[별지 제31호의8서식]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반출 신고서(신고확인증)
	양도·양수·보관 신고	제22조의4 제2항	제29조의6 제1항	[별지 제31호의9서식]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
	폐사 신고	제22조의4 제2항	제29조의6 제2항	[별지 제31호의10서식]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
야생동물 영업	영업허가	제22조의5 제1항	제29조의7 제1항	[별지 제31호의11서식] 야생동물 영업 허가 신청서
		제22조의5 제2항	제29조의7 제7항	[별지 제31호의13서식]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허가증
				[별지 제31호의14서식]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 점검	제29조의8	제29조의7	[별지 제31호의17서식] 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
				[별지 제31호의18서식] 야생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서
	허가증 재발급	제22조의5 제4항	제29조의7 제8항	[별지 제31호의15서식]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허가사항 변경	제22조의5 제1항	제29조의7 제3항	[별지 제31호의12서식]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31호의14서식]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
	지위 승계 신고	제22조의7 제3항	제29조의8 제1항	[별지 제31호의16]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부록 2. 별지 서식 외 서류 목록

한눈에 찾아보는 야생동물 민원 관련 구비 서류 목록

번호	서류 유형	관련 허가·신고	비고
1	수출 확인 서류(신용장, 상업송장(인보이스) 등)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출·반출 허가 모든 지정관리 야생동물:수출·반출신고	증빙 서류
2	적법 포획 및 채취 증명 서류(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 등)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출·반출 허가	발급 서류
3	수송계획서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	신청자 작성
4	사진 또는 가죽견본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	신청자 작성
5	입수 경위 확인 서류(물품매도확약서, 계약서 등)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외): 수입·반입 허가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수입·반입 신고	증빙 서류
6	사용계획서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외): 수입·반입 허가	신청자 작성
7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양도·양수·보관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외): 수입·반입 허가	신청자 작성
8	수출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외): 수입·반입 허가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수입·반입 신고	증빙 서류
9	수출국 인공 사육·재배 야생생물 증명 서류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증빙 서류
11	폐사 증명자료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폐사 신고 모든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	신청자 작성
12	영업장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야생동물 영업: 영업 허가	신청자 작성
13	인력 현황	야생동물 영업: 영업 허가	신청자 작성
14	사업계획서	야생동물 영업: 영업 허가	신청자 작성
15	시설 기준 증명서류	야생동물 영업: 영업 허가	신청자 작성
16	법정 교육 이수증	야생동물 영업: 영업 허가	발급 서류

자주 하는 질문

Q1. 개와 고양이, 가축도 허가·신고 대상인가요?

A1. 반려동물과 가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Q2. 농식품부에서 말하는 '가축'은 무엇인가요?

A2.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자, 농업인확인서발급자)가 축산법에 따른 가축 종류를 키우는 경우의 동물 개체를 말합니다.

※ 5쪽 가축 관련내용 참고

Q3. 가축의 경우 영업허가 신청이나 양도·양수 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3. 네.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직접 판매할 때는 영업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농가로부터 구매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2차로 판매할 경우에는 야생생물법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가 필요합니다.

Q4. 허가·신고 대상 야생생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허가·신고 대상 야생생물을 포함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리 법정관리종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cee.go.kr)에서 학명이나 국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명, 국명에 대한 설명은 15쪽 설명 참고

Q5. 현재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경우에 보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A5. 네. 개정 법률 시행일(2025년 12월 14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모든 허가·신고 대상 야생생물은 '26.6.13까지 보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부터 사육 중인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cee.go.kr)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한 마리도 신고 대상인가요?

A6. 네. 개체수와 상관없이 모두 보관·양도·양수·폐사 신고 대상입니다.

Q7. 동물원에서 보관 중인 야생동물도 제도 시행 후 보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야생동물을 판매한다면 영업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A7. 네. 동물원에서 보유 중인 수출·수입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도 역시 보관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을 일정규모 이상 판매한다면 야생동물 영업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Q8. 보관 신고 후에 새끼가 태어나면, 그 개체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8. 아닙니다. 백색목록 또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8] 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은 새끼가 태어나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9. 판매가 아닌 무료 분양이나 지인에게 주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9. 네.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고받는 모든 경우에는 양도·양수 신고가 필요합니다.

Q10. 온라인이 아닌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10. 네.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Q11. 이미 시행해 온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허가 제도는 사라지나요?

A11. 아닙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8]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에 대한 허가 의무는 유지되고,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Q12.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지정관리 야생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키울 수 없나요?

A12. 개정법률 시행일('25.12.14) 이전에 보유한 백색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종은 '26.6.13까지 '보관' 신고를 하시면 해당 개체가 폐사할 때까지 사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번식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관신고한 자는 해당 종이 더 이상 증식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Q13.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소재한 업체에서 야생동물을 분양받았습니다. 양도·양수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A13. 분양한 영업자(양도자)는 서울 관할기관(구청)에 양도 신고를 하고, 분양을 받은 양수자는 부산 관할기관(구청)에 양수 신고를 합니다.

Q14. 영업허가 대상 규모를 충족하지 않는 소규모 판매자는 어떻게 되나요?

A14. 영업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소규모 판매자는 영업허가 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무허가 판매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12쪽 영업 허가 설명 참고

Q15. 영업 허가 대상 규모 관련하여 야생동물 보유량을 계산할 때 성체와 새끼를 구분하나요?

A15. 성체와 새끼 구분 없이 보유하는 모든 개체수가 포함됩니다.

Q16.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도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16.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건축물과 소재지 특성,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군·구 건축과 등 담당자 최종검토가 필요합니다.

※ p.95 건축물 용도 설명 참고

Q17. 미성년자도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17. 아닙니다. 야생생물법 제22조의6(결격사유)에 따라 미성년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18. 영업자 점검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A18. 1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기준 유지 여부와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Q19. 법정교육은 대표자(영업자)만 받을 수 있나요?

A19. 아닙니다.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Q20. 온라인이나 박람회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A20. 가능합니다. 다만 박람회 등을 통한 야생동물의 이동식·일시적(10일 이내) 판매는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사육설비 크기 등)을 지키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Q21. 전문 운송업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21. 운송중인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야생동물 영업자는 일반 택배나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한 운송을 할 수 없습니다.

Q22. 케이지 안에 여러 마리를 사육할 경우 몸길이 등 규정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22. 각 개체가 필요한 넓이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몸길이가 10cm인 개체 A, 5cm인 개체 B 두 마리를 합사한다면 최소 375㎠가 필요합니다.

(최소 필요 면적) = (개체 A가 필요한 면적) + (개체 B가 필요한 면적) = 300㎠ + 75㎠
(개체 A가 필요한 면적): 300㎠ = (10㎝ × 2) × (10㎝ × 1.5)
(개체 B가 필요한 면적): 75㎠ = (5㎝ × 2) × (5㎝ × 1.5)

Q23. 제도 시행 유예기간은 따로 없나요? '25.12.14에 바로 시행되는 것인지?

A23. '22.12.13 야생생물법 개정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이 기 부여되어 추가적인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1년간(~'26.12.13)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이란 법령은 원래대로 시행되나 처분보다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기간이며 이때 무조건 처분이 면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법 위반이나 시정 지시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Q24.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관내에 제도 홍보를 하고 싶은데 참고할 자료가 있나요?

A24. 백색목록 및 영업허가 제도 관련 홍보자료 및 안내자료 등은 '야생동물 영업자 법정교육'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으니 해당 사이트 자료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소: www.wildlife-edu.kr - 커뮤니티 - 자료실

Q25. 일반직 공무원이라 야생동물을 잘 모르고 관련 지식이 없어서 종 판별을 하기가 어려워요.

A25. 거래량이 많은 주요 야생동물 80종에 대한 사진과 생태정보가 기재된 포스터와 카드뉴스 자료 등을 제작.배포 하였습니다. 법정교육 온라인 사이트에 홍보자료가 업로드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에 종 판별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Q26.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결재(관인 날인)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A26. '26년 上 중 시스템 내 결재(관인 날인)기능을 포함하여 여타 미비사항에 대한 순차적 기능 개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인허가증 파일(pdf, hwp 형식 등)을 다운받아 별도 내부결재 등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hwp 파일로 다운로드 시, PC환경에 따라 편집이 깨질 수 있으니 유의바람(기능개선 예정)

※ p.78 참고